

주요국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제도 조사

박명호 · 기은선 · 정경화

2009. 12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연구원

목 차

I. 서론	9
II.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제도 현황	11
1. 간이과세자의 범위	11
2. 간이과세 계산구조	16
3. 납부의무의 면제	19
4.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비교	19
III. 외국의 소규모 사업자 부가가치세 특례제도	22
1. 영국	22
2. 프랑스	41
3. 일본	46
4. 뉴질랜드	53
5. 체코	58
6. 핀란드	59
7. 그리스	60
8. 헝가리	61
9. 아이슬란드	64
10. 아일랜드	64
11. 독일	65
12. 호주	73
13. 캐나다	81
14. 오스트리아	89
15. 벨기에	91

16. 덴마크	94
17. 이탈리아	95
18. 스페인	97
19. 네덜란드	99
20. 룩셈부르크	101
21. 노르웨이	103
22. 폴란드	105
23. 포르투갈	106
24. 슬로바키아	108
25. 스웨덴	109
26. 스위스	111
27. 터키	112
IV. 결론: 국제비교 및 시사점	114
1. 국제비교	114
2. 시사점	131
참고문헌	133

표 목 차

〈표 II-1〉 간이과세 배제 업종	12
〈표 II-2〉 과세특례제도의 변천	15
〈표 II-3〉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추이	17
〈표 II-4〉 간이과세자의 계산구조	19
〈표 II-5〉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비교	20
〈표 II-6〉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별 신고인원 및 납부할세액 비교	21
〈표 III-1〉 영국의 부가가치세율	22
〈표 III-2〉 VAT 등록면제조건	23
〈표 III-3〉 VAT 등록 기준금액 변천	24
〈표 III-4〉 단일세율제도의 적용요건	26
〈표 III-5〉 단일세율제도의 기준금액 변천	26
〈표 III-6〉 표준적인 VAT회계 vs. 단일세율제도	28
〈표 III-7〉 공급대가의 계산방식	28
〈표 III-8〉 공급대가의 범위	29
〈표 III-9〉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29
〈표 III-10〉 다른 VAT 특례제도와와의 병행 여부	33
〈표 III-11〉 표준적인 VAT회계와 현금주의회계제도 비교	34
〈표 III-12〉 현금주의회계제도의 장단점	35
〈표 III-13〉 현금주의회계제도의 기준금액 변천	36
〈표 III-14〉 현금주의회계제도의 거래시기	37
〈표 III-15〉 연차회계제도의 장단점	38
〈표 III-16〉 단일세율제도의 기준금액 변천	39

〈표 Ⅲ-17〉 연차회계제도의 납부기한	40
〈표 Ⅲ-18〉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프랑스의 과세특례	42
〈표 Ⅲ-19〉 VAT 납부의무 면제기준금액	43
〈표 Ⅲ-20〉 VAT의 신고주기	45
〈표 Ⅲ-21〉 연차신고의 중간예납(프랑스)	46
〈표 Ⅲ-22〉 납세사업자 등 신고건수	48
〈표 Ⅲ-2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소비세 납부세액 계산산식	49
〈표 Ⅲ-24〉 일본의 간이과세자 규모	50
〈표 Ⅲ-25〉 한 종류의 사업만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매입공제세액 계산산식	50
〈표 Ⅲ-26〉 2종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공제세액 계산산식	51
〈표 Ⅲ-27〉 간주매입률	53
〈표 Ⅲ-28〉 GST등록 기준금액 변천	54
〈표 Ⅲ-29〉 뉴질랜드의 GST 회계제도	55
〈표 Ⅲ-30〉 GST 회계제도의 유형별 장단점	56
〈표 Ⅲ-31〉 뉴질랜드의 GST 과세기간	57
〈표 Ⅲ-32〉 전체 매입세액(input tax)의 계산을 위한 평균적인 표준율	69
〈표 Ⅲ-33〉 일부 매입세액(input tax)의 계산을 위한 평균적인 표준율	71
〈표 Ⅲ-34〉 호주의 예정고지납부제도	77
〈표 Ⅲ-35〉 발생주의회계와 현금주의회계제도 비교	79
〈표 Ⅲ-36〉 캐나다의 PST 세율	83
〈표 Ⅲ-37〉 간편계산자 1억년의 공급대가 산정방법	85
〈표 Ⅲ-38〉 간편계산제도 적용자 규모	85
〈표 Ⅲ-39〉 2003-04 매출액 구간별 등록인원 현황	86
〈표 Ⅲ-40〉 간편계산자의 적용 부가가치율(The Quick Method remittance rates)	87
〈표 Ⅲ-41〉 간편계산의 예시	88
〈표 Ⅲ-42〉 캐나다의 신고주기	89
〈표 Ⅲ-43〉 스웨덴의 부가세 신고횟수	110

〈표 IV-1〉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VAT 과세특례제도 국제비교	115
〈표 IV-2〉 VAT/GST 등록/납부면제 기준금액 국제비교	117
〈표 IV-3〉 간편납세제도 적용국가	118
〈표 IV-4〉 간편납세제도 적용요건	119
〈표 IV-5〉 간편납세제도 기준금액	121
〈표 IV-6〉 간편납세제도 계산산식	122
〈표 IV-7〉 간편납세제도 적용세율 국제비교	124
〈표 IV-8〉 간편납세제도하의 세무행정	125
〈표 IV-9〉 신고횟수 축소 적용요건	127
〈표 IV-10〉 신고횟수 축소 기준금액	128
〈표 IV-11〉 현금주의 회계제도 기준금액	130
〈표 IV-12〉 현금주의 회계제도 적용요건	130

I. 서론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특례제도로써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음
 - 간이과세제도는 세법 지식·기장능력 부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에게 적용함

- 소규모 사업자는 세법에 관한 지식과 납세순응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수수 및 장부의 기장 등 납세협력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임
 - 조세 수입에도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자를 상대로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무행정상의 관리를 하는 것은 비효율성을 야기함

- 따라서 우리나라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일반과세자보다 간편한 방법에 의해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간이과세제도를 시행중임
 - 행정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부가가치세 계산의 편의 도모 등을 통한 납세협력비용의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임

- 또한 동시에 현행 간이과세제도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그러나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인해 간이과세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로 남기 위해 매출액을 축소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이처럼 납세협력비용 측면뿐만 아니라 세부담 측면에서도 유리한 간이과세자로 남기

위하여 매출액을 축소하는 등 간이과세제도로 인한 탈세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간이과세자를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수년 동안 동결시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영세 사업자가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의 상대적인 과중함, 물가인상률 및 경제성장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간이과세 기준금액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부가가치세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간편한 방법에 의해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OECD 국가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제도를 조사하고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간이과세제도의 개선 논의시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보고서의 연구범위와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외국의 간편납세제도¹⁾ 운영 여부, 간편납세 기준금액,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등 다양한 특례제도 파악 등을 조사 범위로 함
-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제도 현황에 대해서 살펴봄
- 제3장은 주요국의 사례분석으로 OECD 국가의 소규모 사업자 부가가치세 특례제도에 대해 살펴봄
-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다루어진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별 특징을 비교·분석함

1)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자의 계산구조와 유사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도출하는 외국의 제도들을 간편납세제도로 호칭하였음

II.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제도 현황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고 확정지어야 함
 - 이러한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지식, 기장능력이 요구됨

- 그러나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고, 세액에 비하여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됨
 - 이에 따라 영세사업자가 간편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제도는 간편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낮춰주는 특징도 존재함

1. 간이과세자의 범위

가. 적용대상자

-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에 대해 제25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 “간이과세자”를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

인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800만원을 말함(99.12.31. 개정)

나. 적용 배제 업종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므로 최종소비자 대상업종에 적용함
-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므로 법인은 규모가 영세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인 광업, 도매업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 사업은 부동산투기규제 및 과소비규제 목적으로, 전문직 사업자는 세원포착 목적으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음(부령 74조 2항)

〈표 Ⅱ-1〉 간이과세 배제 업종

구분	업종
거래단절 방지	광업, 제조업 ¹⁾ ,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부동산투기규제	부동산매매업, 법 소정 부동산임대업
과소비규제	법 소정 요건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
세원포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주: 1)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기타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은 간이과세 적용대상임

1) 간이과세배제 종목기준²⁾

- 종목기준은 다음에 열거하는 지역에서 적용하며, 동 지역에서 종목기준에서 열거하는 종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지역 제외)
 - 수도권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2) 간이과세배제 부동산임대업기준

- 부동산임대업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면지역 제외), 시(읍·면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 동 기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에 있는 경우에는 임대용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용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함
-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함

3) 간이과세배제 과세유흥장소기준

- 과세유흥장소기준이 적용되는 과세유흥장소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로 함

2) 구체적인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국세청고시 제2009-18호를 참조

- 특별시·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지역 제외)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읍·면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유흥장소가 과세유흥장소 기준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4) 간이과세배제 지역기준

- 지역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다만, 다음 사업자는 이 기준에 불구하고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
 - 요구르트·화장품·우유·주스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 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간이과세기준금액

1) 기준금액

-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함
 - 1역년의 공급대가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2) 기준금액의 변천

□ 우리나라는 1977년 7월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시점부터 일반과세제도뿐만 아니라 과세특례제도를 운영하였음³⁾

〈표 II-2〉 과세특례제도의 변천

연간 공급대가	연도	1977	1979	1988	1995	2001
1,200만원	과세특례		과세특례		소액부징수	납부면제
	일반과세			과세특례	과세특례	
2,400만원						
3,600만원						
4,800만원						
1억 5,000만원	일반과세	일반과세	일반과세	일반과세	간이과세	일반과세
					일반과세	

주: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1995년까지는 납부세액 기준이었음. 위에서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으로서 면제 기준은 7,500원(1977), 10,000원(1979), 20,000원(1988), 40,000원(1990), 60,000원(1994)임
 자료: 홍범교·김승래·박명호,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7, p. 74

○ 1996년 7월부터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을 일반과세, 간이과세, 과세특례 등 삼원화로 운영하였음⁴⁾

3) 김승래·박명호·홍범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7 발췌 요약

4) 과세특례제도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에게 적용하였음. 이들은 공급대가에 2%의 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매입세액에 대해서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 2000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흡수하였고, 과세특례자는 기존 간이과세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로 다시 이원화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2. 간이과세 계산구조

가. 납부세액 계산

-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하고 당해 과세표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10%의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납부세액임
 - 간이과세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일정률(적용되는 부가가치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되, 납부세액을 초과하더라도 환급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함

$$\text{납부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부가가치율} \times 10\% (\text{영세율 } 0\%)$$

1) 과세표준

-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임
 -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음. 2000년 7월 이전의 간이과세제도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었음.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과세특례자처럼 매입차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음

2)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율이란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감안하여 시행령에 정한 부가가치율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부령 74조의3 4항)

〈표 II-3〉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추이

구분	부가가치율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이후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20%	20%	20%	20%	20% ¹⁾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업대업, 기타 서비스업	20%	22.5%	25%	27.5%	30%
음식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25%	30%	35%	40% ²⁾

주: 1) 소매업에 대하여는 2006.1.1부터 2011.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15%

2) 음식점업, 숙박업에 대하여는 2006.1.1부터 2011.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30%

자료: <http://taxinfo.nts.go.kr/>

나. 공제세액

1) 매입세액공제(세금계산서 등의 수취세액공제)

□ 간이과세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매입차별세금 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text{매입세액공제액} = \text{매입세액} \times \text{업종별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에게 매입세액공제(세금계산서 제출 세액공제)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간이과세자는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므로 매

입세액공제제도는 불필요함

-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도록 함으로써 세금계산서의 수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의제매입세액공제

-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매입가액에 6/106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함

$$\text{의제매입세액공제액} = \text{농산물 등의 가액(매입세액)} \times 6/106$$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다음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함
 -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2010.12.31까지는 1,000분의 13)에 상당하는 금액
 -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2010.12.31까지는 1,000분의 26)에 상당하는 금액
 - 연간 공제한도는 2009.1.1~2010.12.31 이전 700만원, 2011.1.1 이후 500만원

4) 전자신고세액공제

- 간이과세자도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표 II-4〉 간이과세자의 계산구조

납부세액	과세표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영세율 0%)
(-)공제세액	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가산세	사업자 미등록·허위등록,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차가감납부세액	

3. 납부의무의 면제

-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⁵⁾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를 면제함
 - 납부의무 면제자는 가산세에 관한 규정도 적용하지 않음
 - 납부의무 면제대상자가 자진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환급하여야 함

4.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비교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5)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표 Ⅱ-5〉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비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간이과세자 이외의 사업자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배제업종	없음	광업, 도매업 등 간이과세 배제대상 있음
포기제도	없음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음
과세표준	공급가액	공급대가
세율	10%, 0%	업종별 부가가치율×10%(0%)
거래징수	의무 있음	별도규정 없음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교부원칙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능하고 영수증만 교부 가능
매입세액	매입세액 전액 공제	매입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과세표준(공급대가)×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10%
납부의무면제	없음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예정신고	예정신고 고지 및 예정신고제도 있음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 없음
기장	장부에 의하여 기장	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같음

□ 간이과세자의 납부할 세액신고 현황을 보면, '07년 기준 1인당 약 26만원에서 '08년 약 24만원으로 감소함

- 연간 기준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가 되기 때문에 '08년 기준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대략 8.9억원이고, 납부의무 면제금액은 약 34.3억원 수준임
- 개인 일반사업자의 과세표준 규모별(매출액 기준) 납부할 세액 신고 현황을 보면, 연간 기준 납부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2,400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납부할 세액이 음수, 즉 환급세액이 존재함

〈표 II-6〉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별 신고인원 및 납부할세액 비교

(단위: 명, 백만원, 1인당-만원)

구분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신고인원	납부할 세액	1인당 납부할 세액	신고인원	납부할 세액	1인당 납부할 세액
2007년 합계	2,385,687	10,770,773	451.47	1,759,828	451,563	25.66
2,400만 미만	1,095,151	-299,937	-27.39	1,676,129	418,983	25.00
2,400만 이상~4,800만 미만	442,918	1,158,367	261.53	62,726	18,147	28.93
4,800만 이상	847,618	9,912,343	1,169.44	20,973	14,433	68.82
2008년 합계	2,571,056	12,070,614	469.48	1,835,353	431,733	23.52
2,400만 미만	1,189,219	-401,688	-33.78	1,753,875	342,611	19.53
2,400만 이상~4,800만 미만	463,529	551,561	118.99	60,090	67,124	111.71
4,800만 이상	918,308	11,920,742	1,298.12	21,388	21,993	102.83

주: 1. 합계 신고인원은 각 연도 제2기 확정신고인원 기준

2. 납부할세액 = 차감납부할세액 - 차감환급할세액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8~2009.

Ⅲ. 외국의 소규모 사업자 부가가치세 특례제도

1. 영국

가. 부가가치세 현황

- 영국은 다음의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영국에 VAT 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EU 밖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재화 및 일부 용역
 - EU 회원국에서 영국으로 들어오는 재화 및 일부 용역

- 영국은 VAT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전단계세액공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율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크게 표준세율과 경감세율, 그리고 영세율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음
 - 영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08년 12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VAT 표준세율을 17.5%에서 15%로 인하한 바 있음

〈표 Ⅲ-1〉 영국의 부가가치세율

(단위: %)

적용기간	표준세율(standard rate)	경감세율(reduced rate)
94.04.01~08.11.30	17.5	5
08.12.01~09.12.31	15	5
10.01.01~	17.5	5

자료: 영국 국세청(www.hmrc.gov.uk)

□ 영국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VAT 특례제도를 두고 있음

- 등록의무 면제(신고·납부의무 면제)
- 간이과세제도(단일세율제도; flat rate scheme)
- 현금주의회계제도(cash accounting scheme)
- 연차회계제도(annual accounting scheme)

나. 등록의무 면제(신고·납부의무 면제)⁶⁾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가 없음

- 일시적으로 공급가액이 등록 기준금액을 초과하였으나, 장기적으로 공급가액이 등록취소 기준금액(현행 £66,000)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VAT 사업자등록 면제신청을 할 수 있음

〈표 Ⅲ-2〉 VAT 등록면제요건

구분		등록면제요건
1	영국 내의 과세공급 (taxable supplies)	직전 12개월 동안 영국 국내에서 공급한 VAT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¹⁾ 이 £68,000 이하이고, 향후 30일 이내에 이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영국 내의 원격판매 (distance sales) ²⁾	당해 연년 동안 ⁴⁾ 원격판매의 공급가액이 £70,000 이하인 경우 ³⁾
3	영국 내의 취득 (acquisitions)	당해 연년 동안 ⁴⁾ 영국 국내에서 다른 EU 회원국으로부터 취득한 재화의 공급가액이 £67,000 이하이고, 향후 30일 이내에 이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 1) 영세율 공급가액 포함. 그러나 자본자산(예. 건물, 기계장치 또는 자동차)의 양도가액, 면세공급가액 등은 제외.

2) 원격판매(distance sales)란 다른 EU 회원국으로부터 VAT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영국 국내의 고객에게 재화를 판매·배송하는 것을 말함. 원격판매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통신판매, 인터넷 판매 등을 들 수 있음.

3) 단, 영국 국내에서 담배 또는 알코올 등과 같은 소비재를 원격판매 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 없이 VAT 등록을 해야 함

4)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판정시점까지 기간

자료: 영국 국세청(www.hmrc.gov.uk)

6) 「Supplement to Notices 700/1 and 700/11」, HMRC, 2008.04

「Should I be registered for VAT?」, HMRC, 2007.10.

<http://www.hmrc.gov.uk/vat/start/register/when-to-register.htm>

□ VAT 사업자등록이 면제되는 기준금액은 물가변동을 고려하여 해마다 조정이 이루어짐

○ 단, 원격판매에 대한 기준금액(£70,000)은 1993년 1월 1일 기준 도입 이후, 그대로 유지되어 있음

〈표 Ⅲ-3〉 VAT 등록 기준금액 변천

영국 내의 과세공급			영국 내의 취득		
기간		기준금액(£)	기간		기준금액(£)
개시	종료		개시	종료	
90.03.21	91.03.19	25,400	94.01.01	94.12.31	45,000
91.30.20	92.03.10	35,000	95.01.01	95.12.31	46,000
92.03.11	93.03.16	36,600	96.01.01	96.12.31	47,000
93.03.17	93.11.30	37,600	97.01.01	97.12.31	48,000
93.12.01	94.11.29	45,000	98.01.01	98.03.31	49,000
94.11.30	95.11.28	46,000	98.04.01	99.03.31	50,000
95.11.29	96.11.26	47,000	99.04.01	00.03.31	51,000
96.11.27	97.11.30	48,000	00.04.01	01.03.31	52,000
97.12.01	98.03.31	49,000	01.04.01	02.04.24	54,000
98.04.01	99.03.31	50,000	02.04.25	03.04.09	55,000
99.04.01	00.03.31	51,000	03.04.10	04.03.31	56,000
00.04.01	01.03.31	52,000	04.04.01	05.03.31	58,000
01.04.01	02.04.24	54,000	05.04.01	06.03.31	60,000
02.04.25	03.04.09	55,000	06.04.01	07.03.31	61,000
03.04.10	04.03.31	56,000	07.04.01	08.03.31	64,000
04.04.01	05.03.31	58,000	08.04.01	09.04.30	67,000
05.04.01	06.03.31	60,000	09.05.01		68,000
06.04.01	07.03.31	61,000			
07.04.01	08.03.31	64,000			
08.04.01	09.04.09	67,000			
09.05.01		68,000			

자료: 「HMRC Notices 700/1 & 700/11 Supplement」, HMRC, 2008.04.

□ VAT 등록을 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없음

○ 그러나 공급가액이 등록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자발적인 등록이 가능함

다. 간편납세제도(단일세율제도; flat rate scheme)⁷⁾

1) 개요

- 영국은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돕기 위해 2002년 4월, 단일세율제도(flat rate scheme)를 도입함
 - 단일세율제도(flat rate scheme)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turn over;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곱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음

- 단일세율제도의 가장 큰 이점은 매출과 매입에 대해 VAT 기록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임⁸⁾
 - 또한 해당 업종에 적용되는 단일세율만 알면 쉽게 납부세액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흐름 관리에 유용함
 - 그러나 단일세율제도에서는 영세율매출이나 면세매출 역시 단일세율로 과세되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세율 또는 면세매출이 많거나 통상적으로 VAT 환급이 발생하는 사업자는 오히려 불리함

2) 적용범위

가) 기준금액

- 단일세율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테스트를 모두 충족해야 함

7) 「Notice 733: Flat Rate Scheme for small businesses」, HMRC, 2007.03.
<http://www.hmrc.gov.uk/vat/start/schemes/flat-rate.htm>

8) 그러나 공급받는 자가 VAT 등록이 되어 있다면 공급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표 Ⅲ-4〉 단일세율제도의 적용요건

	요건	비고
Test 1	다음 연도 ¹⁾ 의 과세 공급가액 (taxable turnover; 부가가치세 제외)이 £150,000 이하일 것	공급가액에는 자본자산의 양도가액은 제외되나, 아래의 항목은 모두 포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세율·영세율·경감세율 공급가액 마진제도(margin scheme)의 적용을 받지 않는 중고품 매각가액 부가가치세법 제55조의 적용을 받는 투자금 (investment gold)의 공급가액
Test 2	다음 연도 ¹⁾ 의 사업수입금액 (total business income; 부가가치세 포함)이 £187,500 이하일 것	사업수입금액에는 자본자산의 양도가액은 제외되나, 아래의 항목은 모두 포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Test 1에서 계산한 공급가액의 합계 임대료, 은행이자 등과 같은 면세공급가액 사업에서 얻은 기타의 수입(기부 또는 교육활동으로부터 얻은 사업외수입 포함)

주: 1) 다음 연도의 공급가액 또는 사업수입금액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하면 됨. 추정이 실제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경우에는 추정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페널티를 피할 수 있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또는 부적절한 사용의 개시시점부터 단일세율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단일세율제도의 기준금액은 2002년 4월 제도 도입 이후, 단 한차례 인상됐음

〈표 Ⅲ-5〉 단일세율제도의 기준금액 변천

적용기간	연간 과세공급가액(£)	연간 사업수입금액(£)
FY 2002	100,000	125,000
FY 2003 이후	150,000	187,500

자료: British Master Tax Guide, pp. 110, CCH, 2006

나) 배제사업자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일세율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음

- VAT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중고품마진제도(second-hand margin scheme) 또는 경매인제도(auctioneers' scheme)를 이용하는 자⁹⁾
- 패키지투어전문여행업자 마진제도(tour operator's margin scheme)를 적용해야 하

는 자¹⁰⁾

- 자본재제도(Capital Goods Scheme)를 적용해야 하는 자¹¹⁾
- 직전 연도에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하였거나 부가가치세 탈세에 관한 페널티를 부과받은 경우
- 직전 24개월 이내에 그룹(group) 또는 부문(division) 중 하나의 명의로 VAT 등록이 되어 있는 자¹²⁾
- 직전 24개월 이내에 VAT group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 사업체가 아래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방식으로 다른 사업체와 관련돼 있는 경우
 - 하나의 사업체가 다른 사업체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있는 경우
 - 두 개의 사업체가 재무적·경제적·조직적 연결고리에 의해 밀접하게 결합돼 있는 경우
 - 다른 사업체가 해당 사업체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
 - 사실상 해당 사업체가 다른 사업체의 명령에 늘 복종하는 경우

3) 세액계산

가) 계산산식

□ 단일세율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납부세액은 공급대가(turnover)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곱해 계산되는데, VAT 환급은 발생하지 않음

-
- 9) ① 중고품마진제도: 중개업자(trader)가 중고품, 예술품, 수집품 또는 골동품을 판매하는 경우 공급가액이 아닌 마진(margin)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제도
 - ② 경매인제도: 경매인이 자신의 명의로 적격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공급가액이 아닌 마진(margin)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제도
 - 10) 지정된 여행서비스(designed travel service)를 제공하는 패키지투어전문여행업자는 전체 공급가액이 아니라 마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여기에서 지정된 여행서비스란 패키지투어전문여행업자의 사업 목적상 취득하였으며, 중대한 변경이나 추가적인 가공 없이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말함.
 - 11) 경영사업자가 중대한 취득(major acquisition)에 대한 매입세액을 취득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전액 공제받은 후, 면세목적에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면세/과세공급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정산하는 제도
 - 12) 영국의 경우 사업자단위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그룹별 등록(둘 이상의 사업자를 하나의 납세자로 보아 과세) 또는 사업체의 부문별 등록을 허용하고 있음

- 일반적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구입가격이 £2,000 이상인 자본재의 단일 구입(single purchase)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표 Ⅲ-6〉 표준적인 VAT회계 vs. 단일세율제도

	표준적인 VAT회계	단일세율제도
납부세액 계산 방법	매출세액(공급가액×표준·경감·영세율)-매입세액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세율
매입세액공제	분기별로 매입세액공제 가능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 불가. 단, 고가의 자본재 구입에 대해서는 특례 인정.

나) 공급대가의 계산

- 단일세율제도에서는 그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 공급대가의 계산방식에는 기본매출방식(basic turnover method)과 현금주의매출방식(cash based turnover method), 소매주의매출방식(retail based method),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함

〈표 Ⅲ-7〉 공급대가의 계산방식

	구분	설명
1	기본매출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시기(tax point)가 도래한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임 • 과세시기(tax point)는 공급시기에 관한 통상적인 부가가치세법 규정¹⁾을 적용하여 결정됨
2	현금주의매출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된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임 • 즉, 공급시기가 아니라 대가의 수취·지급시점에 과세가 이루어짐
3	소매주의매출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의 매출액(daily taking)을 합산한 후, 매주 또는 매월 단위로 그간의 일별 매출액과 사업자가 얻은 기타의 수입(예. 상가 임대료)을 합산해 공급대가를 계산하는 방식임 • 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현금, 수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전자화폐 등을 수취하는 때마다 이를 그 날의 매출액에 포함해 기록해야 함 • 신용판매, 물납(物納), 상품권을 상품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현금매출에 이를 가산해 매일의 매출액을 계산해야 함

주: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가 과세시기가 되나, 일부 경우에는 대가를 수취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공급받는 자가 재화를 이용 가능하게 된 날이 과세시기가 됨

□ 공급대가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표 Ⅲ-8〉 공급대가의 범위

포함항목	제외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세율(standard rate), 영세율(zero rate) 그리고 경감세율(reduced rate)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함) 면세공급가액(예: 임대료 등) 자본재의 공급가액(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자본재의 공급가액 제외) 역내공급을 하는 경우 다른 EU 회원국에 대한 발송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적 소득(private income; 예를 들면 주식에서 얻은 소득)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소유 재화의 양도가액 부가가치세법 제55조의 적용을 받는 금의 양도가액 사업외수입(non-business income) 및 영국 VAT의 과세대상이 아닌 공급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자본재의 공급가액

다)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 단일세율은 사업자가 속한 업종에 따라 달라짐

○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나타내면 아래 표와 같음

-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의 부가가치세율을 전체 공급대가에 적용함

〈표 Ⅲ-9〉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단위: %)

업종	적용기간		
	02.04.25 ~ 03.12.31	04.01.01 ~ 08.11.30	08.12.01 ~ 09.12.31
회계 또는 기장	13.5	13	11.5
광고	11	9.5	8.5
농업 서비스	9	7.5	7
열거되지 않은 기타 활동	11	10	9
건축, 토목기사, 구조공학 또는 측량기사	13.5	12.5	11
동물사육	11	10.5	9.5
열거되지 않은 사업서비스	12.5	11	9.5
레스토랑, 테이크아웃을 포함한 요식업	13	12	10.5
컴퓨터, IT 컨설팅 또는 데이터 가공	14.5	13	11.5

〈표 Ⅲ-9〉의 계속

업종	적용기간		
	02.04.25 ~ 03.12.31	04.01.01 ~ 08.11.30	08.12.01 ~ 09.12.31
컴퓨터 수리 서비스	13.5	11	10
폐기물 처리	11	9.5	8.5
엔터테인먼트 또는 언론계	12	11	9.5
부동산 중개업 또는 자산관리서비스	11.5	11	9.5
열거되지 않은 농장 또는 농업	6.5	6	5.5
필름,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비디오 제작	n.a.	10.5	9.5
금융서비스	12	11.5	10.5
임업 또는 어업	10	9	8
일반적인 건축 또는 건설서비스	9	8.5	7.5
미용업 또는 기타의 미용처리서비스	13	12	10.5
재화 임대업	9.5	8.5	7.5
호텔 또는 숙박업	10.5	9.5	8.5
수사 또는 보안	11	10	9
노동만의 건축 또는 건설서비스	14.5	13.5	11.5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서비스	12	11	9.5
변호사 또는 법률서비스	13.5	13	12
도서관, 박물관 또는 기타의 문화 활동	8.5	7.5	7.5
경영컨설팅	13.5	12.5	11
열거되지 않은 제조업	10	8.5	7.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1	7.5	8.5
식품 제조업	8.5	7.5	7
방직사, 직물 또는 의류 제조업	9.5	8.5	7.5
회원조직	7	5.5	5.5
광산 또는 채석업	10	9	8
포장	9	8.5	7.5
사진	10	9	8.5
우체국	6	2	2
인쇄	8.5	7.5	6.5
출판	10	9.5	8.5
술집	n.a.	5.5	5.5
열거되지 않은 부동산 사업	13	12	11
가사용품 수리	10	8.5	7.5
자동차 수리	8.5	7.5	6.5
식품, 과자, 담배, 신문 또는 아동의류 소매업	5	2	2
제약, 의약품, 화장품 소매업	8	7	6
열거되지 않은 소매업	7	6	5.5
자동차 또는 연료 소매업	8	7	5.5

〈표 Ⅲ-9〉의 계속

업종	적용기간		
	02.04.25 ~ 03.12.31	04.01.01 ~ 08.11.30	08.12.01 ~ 09.12.31
비서서비스	11.5	11	9.5
사회복지사업	9	8.5	8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	8	7	6
화물운송, 이사, 가이드 서비스와 택시를 포함한 운송 또는 보관사업	10	9	8
여행사	10	9	8
수의학	11	9.5	8
농산품 도매업	7	6	5.5
식품 도매업	7	5.5	5
열거되지 않은 도매업	8	7	6

자료: 「FRS7300/7400- Flat Rate Scheme Guidance: Trade Sectors」, HMRC
 「British tax guide : value added tax 2006-2007」, CCH, 2006

□ 단일세율은 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해당 업종의 소규모 사업자가 납부한 VAT를 반영해 산정함

○ 단일세율은 그동안 2004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이 이루어짐

– 2008년의 단일세율 조정은 VAT 표준세율 인하(17.5%→15%)에 따른 것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VAT 표준세율이 다시 개정 전 수준으로 복귀됨에 따라 단일세율 역시 이를 반영하여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임

□ 한편, 신규로 VAT 등록을 한 자가 등록 즉시 단일세율제도를 사용받는 경우에는 1%의 세율경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2005년 12월 1일에 처음 VAT 등록을 하고 그 날부터 단일세율제도를 이용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세율이 10%라면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기간 동안에는 본래의 부가가치세율 10%가 아니라 경감세율 9%가 적용됨

4) 단일세율제도의 신청·중단·포기

가) 단일세율제도의 신청

- 단일세율제도는 VAT 등록 당시 또는 그 이후에 우편, 이메일, 전화로 신청이 가능함
 - 국세청은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함
 - 통상적인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나, 신청 시점 등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국세청이 그 이전 또는 이후의 일자를 개시일로 지정하는 것 또한 가능함

나) 단일세율제도의 중단

- 일단 단일세율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면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total turnover; 부가가치세 포함)가 £225,000을 초과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단일세율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 그러나 향후 30일 이내에 공급대가가 £225,00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단일세율제도의 적용을 중단해야 함

다) 단일세율제도의 포기

- 단일세율제도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 단일세율제도의 이용을 중단한 경우 12개월 이내에는 복귀가 불가능함
 - 한편, 국세청은 세수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단일세율제도의 이용에 관한 기존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음

5) 기록의 보관

- 단일세율제도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매출과 매입에 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할 필요가 없음

- 단지 VAT 계정(account)¹³⁾과 단일세율 계산에 관한 기록(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와 해당 업종의 단일세율에 관한 기록), 그리고 자신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만 6년간 보존하면 됨
- 그러나 단일세율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VAT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 이 경우 사업자가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으로 사용됨

6) 다른 VAT 특례제도와의 병행

- 단일세율제도는 연차회계제도와 병행 사용이 가능하나, 현금주의회계제도, 소매제도, 중고품마진제도 등과 같은 VAT 특례제도와는 병행 사용이 불가능함
 - 다만, 공급대가의 계산에 있어 현금주의매출방식이나 소매주의매출방식을 이용할 경우 현금주의회계제도 또는 소매제도를 적용받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표 Ⅲ-10〉 다른 VAT 특례제도와의 병행 여부

구분	단일세율제도와 병행	추가정보
연차회계제도	가능	연차회계제도와 단일세율제도를 함께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음 • VAT 납부세액 계산에 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 VAT를 분할 납부함으로써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피할 수 있음 • 1년에 딱 한 번만 VAT 신고를 하면 됨
현금주의회계제도	불가	그러나 현금주의매출방식으로 공급대가를 계산할 경우, 현금주의회계제도를 적용받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소매제도	불가	그러나 소매주의매출방식으로 공급대가를 계산할 경우, 소매제도를 적용받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중고품마진제도	불가	단일세율제도는 마진이 아니라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병행 사용이 불가능함

13) 사업자는 VAT 계정에 매출에 대해 과세되는 VAT와 매입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VAT를 별도로 기록해야 함

라. 현금주의회계제도(cash accounting)¹⁴⁾

1) 개요

- 현금주의회계제도는 거래의 발생시점이 아니라 현금의 수취·지급시점에 기초해 VAT를 계산하는 회계방식을 말함
- 매출에 대한 VAT(매출세액)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하며, 매입에 대한 VAT(매입세액)는 공급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음

〈표 Ⅲ-11〉 표준적인 VAT회계와 현금주의회계제도 비교

표준적인 VAT회계	현금주의회계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자신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 VAT를 납부함 • 아직 공급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신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VAT를 공제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하는 때 VAT를 납부함 • 공급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때 VAT를 공제받음

- 그러나 현금주의회계제도를 사용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표준적인 VAT회계를 이용해 VAT를 신고해야 함
- 임차만기구입방식(lease purchase), 할부 구입, 조건부 판매 또는 신용판매를 이용해 재화를 구입·판매하는 경우
 - 재화를 수입하거나 다른 EU 회원국으로부터 재화를 역내 취득한 경우
 - 세관창고 또는 자유지역(free zone)으로부터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14) Notice 731: Cash accounting, 2008.07.

□ 현금주의회계제도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Ⅲ-12〉 현금주의회계제도의 장단점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하는 시점까지 VAT를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후불이 많은 경우 현금흐름에 유리함 • 대손채권이 발생할 경우 VAT를 납부할 필요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VAT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용구매가 많을 경우 불리함 • 통상적으로 VAT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표준적인 VAT회계에 비해 환급금을 더 늦게 받기 때문에 불리함

□ 현금주의회계제도는 연차회계제도, 소매제도, 중고품 마진제도, 패키지투어전문여행업자 마진제도와 병행 사용이 가능함

○ 그러나 단일세율제도와는 병행 사용이 불가능함

2) 적용요건

□ 다음 연도의 과세 공급가액(taxable supplies)이 £1,350,000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현금주의회계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이 때 “과세 공급가액(taxable supplies)”에는 표준세율·경감세율·영세율 공급가액이 모두 포함되나, VAT와 면세공급가액, 자본자산의 양도가액 등은 포함되지 않음

○ 한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주의회계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음

– 현재까지 VAT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자

• 단, 미납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기로 국세청과 약정을 체결하면 적용 가능

– 직전연도에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하였거나 VAT 탈세에 관해 페널티를 부과받은 경우

□ 현금주의회계제도의 기준금액은 제도 도입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조정이 이루어진

바, 현재의 기준금액(£1,350,000)은 2007년 4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음

〈표 Ⅲ-13〉 현금주의회계제도의 기준금액 변천

적용기간	연간 공급가액(£)
87.10.01~90.09.30	250,000
90.10.01~93.03.31	300,000
93.04.01~01.03.31	350,000
01.04.01~04.03.31	600,000
04.04.01~07.03.31	660,000
07.04.01~	1,350,000

자료: British Master Tax Guide, CCH, 2006

3) 기록의 보관

- 현금주의회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함
 - 고객으로부터 동전 또는 지폐로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이면에 지급금액과 지급일을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보관해야 함
 - 마찬가지로 공급자에게 동전 또는 지폐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면에 지급금액과 지급일을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 사본을 보관해야 함
 - 또한 수취금액과 해당되는 매출세금계산서, 지급금액과 해당되는 매입세금계산서, 통상적인 상업증빙(예를 들면 은행명세서, 수표책, 지급명세)과 수취·지급금액 간의 상호관계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기록을 보관해야 함

4) 거래시기

- 현금주의회계제도에서 재화 및 용역의 거래시기는 다음과 같음
 - 거래시기는 개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어느 과세기간에 포함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시간적 기준이 됨

〈표 Ⅲ-14〉 현금주의회계제도의 거래시기

매출세액	매입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동전 또는 지폐)으로 대가를 수취한 경우: 금전을 수취한 날 • 지로 또는 계좌이체로 대가를 수취한 경우: 은행계좌 입금일 • 신용카드로 대가를 수취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날(신용카드사로부터 실제 대가를 수취한 날이 아님) • 수표로 대가를 수취한 경우: 수표를 교부한 날 또는 수표상의 일자 중 늦은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동전 또는 지폐)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금전을 지급한 날 • 지로 또는 계좌이체로 대가를 지급한 날: 은행계좌 출금일 • 신용카드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생성된 날 • 수표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수표를 송부한 날 또는 수표상의 일자 중 늦은 날

5) 현금주의회계제도의 신청 · 중단 · 탈퇴

- 현금주의회계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신청이 필요함
 - 그러나 사용중단은 각 VAT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가능하며, 국세청에 이 사실을 통보할 필요 또한 없음
 - 한편, 연간 과세 공급가액이 £1,600,000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금주의회계제도의 사용을 중단해야 함
 - 국세청은 언제든지 현금주의회계제도의 사용에 관한 기존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는바, 승인철회사유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VAT 계산을 틀리게 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한 경우
 - VAT 탈세에 관한 페널티를 부과받은 경우
 - 현금주의회계제도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 6개월 이내에는 복귀가 불가능함

마. 연차회계제도(annual accounting)¹⁵⁾

1) 개요

- 일반적인 경우에는 분기마다 VAT를 신고해야 하나, 연차회계제도를 이용할 경우 1년에 딱 한 번만 VAT를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VAT 신고에 드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신고는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지만, 연말에 과중한 VAT 납부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간예납제도를 두고 있음
 - 연차회계제도는 단일세율제도, 현금주의회계제도, 소매제도, 마진제도, 자본재제도, 패키지투어전문여행업자 마진제도와 병행 사용이 가능함

- 연차회계제도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Ⅲ-15〉 연차회계제도의 장단점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에 4번이 아니라 1번만 VAT를 신고하면 됨 • 과세기간 종료 후 2개월(일반적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VAT를 신고·납부하면 됨 • 매월 또는 분기별로 예납해야 할 금액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흐름 관리가 용이함 • 사업자가 원할 경우 고지금액보다 많은 VAT를 미리 납부하는 것 또한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AT 환급을 1년에 한 번밖에 못 받음 •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연차회계제도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표준적인 VAT회계에 따른 납부세액보다 큼 • 전자납부가 강제되며, 납부기한 연장이 불가능함

2) 적용요건

- 다음 연도의 과세 공급가액(taxable supplies)이 £1,350,000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연차회계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15) Notice 732 Annual Accounting, 2009.08.
<http://www.hmrc.gov.uk/vat/start/schemes/annual.htm>

- 이 때 “과세 공급가액(taxable supplies)”에는 표준세율·경감세율·영세율 공급가액이 모두 포함되나, VAT와 면세공급가액, 자본자산의 양도가액 등은 포함되지 않음
- 한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차회계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그룹의 일부 또는 회사의 부문(division)으로 VAT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연차회계제도의 사용을 중단한 지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VAT 미납세액(debt)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경우
 -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 연차회계제도의 기준금액은 제도 도입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조정이 이루어진바, 현재의 기준금액(£1,350,000)은 2006년 4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음

〈표 Ⅲ-16〉 단일세율제도의 기준금액 변천

적용기간	연간 공급가액(£)
91.04.09~01.03.31	300,000
01.04.01~04.03.31	600,000
04.04.01~06.03.31	660,000
06.04.01~	1,350,000

자료: British Master Tax Guide, CCH, 2006

3) 신고·납부

- 연차회계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3번(분기 단위 납부) 또는 9번(매월 단위 납부)에 걸쳐 VAT를 예납해야 함
 - 예납세액과 납부기한은 국세청이 고지함
 - 월별납부의 경우에는 직전연도¹⁶⁾ VAT 납부세액의 10%씩을 9번에 걸쳐 고지함
 - 분기납부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VAT 납부세액의 25%씩을 3번에 걸쳐 고지함

16) VAT 등록 후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VAT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함

- 그러나 사업자가 고지금액보다 많은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 또한 가능함
- 연차회계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VAT 연도(VAT year)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간 VAT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바, 이 때 최종적인 세액 정산이 이루어짐

〈표 III-17〉 연차회계제도의 납부기한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1)	14(2)
매월납부				1 번째	2 번째	3 번째	4 번째	5 번째	6 번째	7 번째	8 번째	9 번째		최종 납부
분기납부				1 번째			2 번째			3 번째				최종 납부

자료: Notice 732 Annual Accounting, HMRC, 2009.

4) 연차회계제도의 신청 · 중단 · 탈퇴

- 연차회계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신청이 필요함
 - 하나의 양식을 이용해 연차회계제도와 단일세율제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음
- 연차회계제도를 적용받게 된 경우 VAT 납부세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국세청에 통보해야 함
 - VAT 납부세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동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 매출액이 직전연도에 비해 크게 상승(또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VAT 과세대상 공급가액이 £1,600,00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VAT 납부세액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연차회계제도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해야 함
 - 한편 연간 과세 공급가액이 £1,600,000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차회계제도의 적용을 중단해야 함

- 국세청은 언제든지 연차회계제도의 사용에 관한 기존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는바, 승인철회사유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VAT 계산을 틀리게 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한 경우
 - VAT 탈세에 관한 페널티를 부과받은 경우
- 연차회계제도 사용을 중단한 경우 12개월 이내에는 복귀가 불가능함

2. 프랑스

가. 부가가치세 현황¹⁷⁾

- 프랑스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그리고 EU 역내취득(Intra-community acquisitions)에 대해 VAT를 부과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율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바, 크게 표준세율과 경감세율, 그리고 영세율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음
 - 표준세율은 19.6%이고, 경감세율에는 5.5%와 2.1%, 두 가지 종류가 있음
- 프랑스는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자를 일반과세자와 간편과세자, 소규모 사업자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각각의 유형별로 과세방법, 조세부담, 납세협력의무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함
 - 특히, 세 가지 유형의 구분에 있어 소득세와 VAT의 기준금액이 동일한 것이 특징임
 - 간편과세자 또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VAT 특례제도로는 납부의무면제와 연차신고제도가 있음

17) www.ibfd.org, 『주요국의 조세제도(프랑스)』, 한국조세연구원, 2009.

〈표 Ⅲ-18〉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프랑스의 과세특례

구분		일반과세자	간편과세자	소규모 사업자
기준금액 (연간 수입금액) ¹⁾	재화 등 ²⁾ 의 공급	EUR763,000 초과	EUR80,000 초과 EUR763,000 이하	EUR80,000 이하
	기타용역의 공급	EUR230,000 초과	EUR32,000 초과 EUR230,000 이하	EUR32,000 이하
VAT 과세특례	신고	매달 신고	年1회 신고	신고의무 없음 ³⁾
	납부	매달 납부	年5회 납부(4회의 예정납부 포함)	납부의무 없음 ³⁾
사업소득 과세특례	장부기장	복식부기의무	간편장부 사용	일기장 방식
	신고	매년 신고	매년 신고	신고의무 없음
	납부	실제 과세소득에 기초해 납부	실제 과세소득에 기초해 납부	추계에 의한 과세

주: 1) VAT를 제외한 공급가액

2) 재화의 공급, 숙박의 제공, 현장소비(on-the-spot consumption)를 위한 음식 및 음료의 제공

3) 신고·납부의무의 면제가 등록의무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바,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VAT 등록은 필요함

자료: 『주요국의 조세제도(프랑스)』, 한국조세연구원, 2009. 수정

나. 납부의무 면제

□ 직전연도의 수입금액(turnover)이 아래의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는 VAT의 납부의무가 없음¹⁸⁾

- 일반적인 경우: 재화의 공급·숙박의 제공·현장소비를 위한 음식 및 음료의 제공에 대해서는 EUR80,000, 기타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EUR32,000
- 변호사, 저작자, 예술가:
 - 변호사직무감독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예. 법률자문, 소송 대리 등)의 제공 또는 저작자 또는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이나 이에 귀속되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이하 “특정한 용역의 공급”)에는 EUR41,500
 - 기타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EUR17,000

18) Code général des impôts(이하 “CGI”) Article 293B

- 그러나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납부의무면제규정의 적용이 중단되는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달의 첫째 날부터 VAT의 납부의무가 생김¹⁹⁾
 - 일반적인 경우: 재화의 공급·숙박의 제공·현장소비를 위한 음식 및 음료의 제공에 대해서는 EUR88,000, 기타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EUR34,000
 - 변호사, 작가, 예술가: 특정한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EUR51,000, 기타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EUR20,500

〈표 Ⅲ-19〉 VAT 납부의무 면제기준금액

(단위: EUR)

구분		납부의무면제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연간 기준금액	납부의무면제규정의 적용이 중단되는 기준금액
일반적인 경우	재화의 공급, 숙박의 제공, 현장소비를 위한 음식 및 음료의 제공	80,000	88,000
	기타 용역의 공급	32,000	34,000
변호사, 작가, 예술가	특정한 용역의 공급	41,500	51,000
	기타 용역의 공급	17,000	20,500

- 이 때 “수입금액(turnover)”이란 VAT를 제외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말하는 바, VAT 면세거래, 자본자산의 양도 등은 제외함²⁰⁾
 - 한편 농산물 거래²¹⁾, 건설업, 신규 교통수단의 EU 역내취득에 대해서는 납부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바, 납부의무면제규정의 적용 여부는 전적으로 납세자의 선택사항임²²⁾
 - 특히,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아 VAT 환급이 발생하는 사업자는 표준적인

19) CGI Article 293B

20) CGI Article 293D

21) 농업 사업자의 경우에는 다른 규정에 의해 VAT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있음

22) CGI Article 293F

VAT회계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함

- VAT 납부를 선택한 경우에는 신고일이 속한 달의 첫 번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함
- VAT과세의 선택은 신고연도를 포함해 2년간 유효함

□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청구서 또는 이를 대신한 기타의 서류에 VAT 금액을 표시할 수 없음²³⁾

-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청구서 또는 이를 대신한 기타의 서류의 주석에 “CGI(Code Général des Impôts) Article 293B에 따라 VAT가 적용되지 않음”이란 문구를 포함해야 함

다. 연차신고제도

□ 일반적인 경우에는 월별신고가 원칙이나, 간편신고자는 연차신고가 가능함

-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이하인 간편신고자(Régime du Réel Simplifié)는 1년에 한 번만 VAT를 신고하면 됨²⁴⁾
 - 재화의 공급 · 숙박의 제공 · 현장소비를 위한 음식 및 음료의 제공에 대해서는 EUR763,000
 - 기타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EUR230,000
- 연차신고제도의 적용 여부는 전적으로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연차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월 단위로 VAT를 신고 · 납부하면 됨

23) CGI Article 293E

24) CGI Article 302 septies A

〈표 Ⅲ-20〉 VAT의 신고주기

	적용대상
월별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사업자가 재화의 공급, 숙박·현장소비를 위한 음식 및 음료의 제공에서 얻은 연간 수입금액이 EUR840,000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기타 용역의 공급에서 얻은 연간 수입금액이 EUR260,00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ii)연간 VAT 매출세액이 EUR4,000을 초과하는 경우 •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사업자가 월별신고를 선택한 경우
분기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사업자가 재화의 공급, 숙박·현장소비를 위한 음식 및 음료의 제공에서 얻은 연간 수입금액이 EUR763,000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기타 용역의 공급에서 얻은 연간 수입금액이 EUR230,00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ii)연간 VAT 매출세액이 EUR4,0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연차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 숙박·현장소비를 위한 음식 및 음료의 제공에서 얻은 연간 수입금액이 EUR763,000 이하인 경우 또는 기타 용역의 공급에서 얻은 연간 수입금액이 EUR230,000 이하인 경우

□ 연간 수입금액이 상기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연도의 첫 번째 날부터 매월 단위로 VAT를 신고·납부해야 함

○ 그러나 연간 수입금액이 EUR840,000(재화의 공급·숙박의 제공·현장소비를 위한 음식 및 음료의 제공) 또는 EUR260,000(기타 용역의 공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기준금액을 초과한 날부터 연차신고의 적용을 중단하고, 일반적인 VAT회계에 따라 매월 단위로 VAT를 신고·납부해야 함

- 연간 수입금액이 두 번째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한 달 내에 그 해의 첫 번째 날부터 두 번째 기준금액을 초과한 달의 말일까지 행한 거래에 대해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함

□ 연차회계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신고는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지만, 4번의 중간예납이 필요함

○ 중간예납은 4월, 7월, 10월, 12월에 이뤄지며, 중간예납금액과 실제세액과의 차이는 익년 4월의 연차신고때 정산이 이루어짐

〈표 Ⅲ-21〉 연차신고의 중간예납(프랑스)

납부시기	구분	금액
n사업연도의 4월	첫 번째 중간예납	(n-2)사업연도 납부세액의 25%
n사업연도의 4월 말일	연차신고정산	(n-1)사업연도의 매출세액-매입세액
n사업연도의 7월	두 번째 중간예납	(n-1)사업연도 납부세액의 25%
n사업연도의 10월	세 번째 중간예납	(n-1)사업연도 납부세액의 25%
n사업연도의 12월	네 번째 중간예납	(n-1)사업연도 납부세액의 20%

주: 『주요국의 조세제도(프랑스)』, 한국조세연구원, 2009

3. 일본

가. 부가가치세 현황

- 일본은 국내에서 사업자가 행한 자산의 양도 등과 보세지역에서 인수하는 외국화물에 대하여 소비세(VAT)를 과세함²⁵⁾
 - 국세소비세의 세율은 4%이나 소비세의 25%가 지방소비세로 부과되는바, 지방소비세율을 감안하면 그 부담률은 5%임²⁶⁾
- 일본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VAT 특례제도를 두고 있음
 - 납세의무면제(신고·납부의무면제)
 -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VAT 사업자등록제도가 없음
 - 간이과세제도

25) 소비세법 제4조

26) 소비세법 제29조

나. 납세의무 면제(신고·납부의무 면제)²⁷⁾

- 일본은 중소기업자의 납세사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준 과세기간의 과세 매출액이 1천만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소비세 납세의무를 면제함²⁸⁾
 - 여기에서 “기준과세기간”이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전년, 법인의 경우에는 전전 사업연도를 의미함²⁹⁾
 - 납세의무면제규정은 국내에서 사업자가 행한 자산의 양도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보세지역에서 인수하는 외국화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2004년 4월 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있어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기준과세기간의 과세 매출액의 상한은 1천만 이하임

- 기준기간의 “과세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말함³⁰⁾
 - 개인사업자 및 기준기간이 1년인 법인의 경우에는 기준기간 중에 국내에서 행한 ‘과세자산의 양도대가금액’에서 ‘매출과 관계되는 대가의 반환 등의 금액(예. 반품, 할인, 리베이트 등)’³¹⁾을 공제한 잔액을 말함
 - 이 때 “과세자산의 양도대가금액”이란 대가로서 수수하거나 수수해야 하는 일체의 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물건 또는 권리 기타 경제적 이익의 액수로 과세자산의 양도에 대해 부과돼야 하는 국세소비세 및 지방소비세는 포함하지 않음³²⁾
 - 기준기간이 1년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기준기간 중에 국내에서 행한 ‘과세자산의 양도대가금액’에서 ‘매출과 관계되는 대가의 반환 등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해당 법인의 해당 기준기간에 포함되는 사업연도의 월수의 합계로 나누고, 이것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27) <http://www.nta.go.jp/taxanswer/shohi/6501.htm>
<http://www.nta.go.jp/taxanswer/shohi/6503.htm>

28) 소비세법 제9조 제1항

29) 소비세법 제2조 제14호

30) 소비세법 제9조 제2항

31) 소비세를 제외한 가액

32) 소비세법 제28조 제1항

- 한편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기준기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사업연도와 두 번째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면세사업자(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 이하 동일)가 됨
- 그러나 기준기간이 없는 사업연도라도 그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자본금의 액수 또는 출자금액이 ¥1천만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음³³⁾
- 면세사업자는 구입 등에 관한 소비세 공제가 불가능한바, 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없음
-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수출업자와 같이 통상적으로 소비세 환급이 발생하는 사업자 등은 환급을 받기 위해 과세사업자가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과세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비세과세사업자선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이 신고서는 적용하려고 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의 전날까지 제출해야 함
 - 이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사업폐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선택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된 최초의 과세기간을 포함해 2년간 면세사업자로 복귀할 수 없음
 - 한편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표 Ⅲ-22〉 납세사업자 등 신고건수

과세사업자신고서	과세사업자선택신고서	신설법인에 해당하는 취지의 신고서	합계
3,583,297	84,826	32,808	3,700,931

주: 2008년 3월 31일 현재의 신고건수

자료: <http://www.nta.go.jp/kohyo/tokei/kokuzeicho/shohi2007/pdf/shohi.pdf>

33) 소비세법 제12조의 2

다. 간이과세제도

1) 간이과세제도의 개요³⁴⁾

- 소비세 납부세액은 통상적으로 매출세액(=과세 매출액×4%)에서 매입공제세액을 차감해 계산함
 - 그러나 i)그 과세기간의 전전년 또는 전전 사업연도의 과세 매출액이 ₩5천만 이하이고 ii)간이과세제도를 적용받겠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한 사업자는 실제의 매입공제세액을 계산하는 일 없이 과세 매출액으로부터 매입공제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2004년 4월 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있어 간이과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 과세기간의 과세 매출액의 상한은 ₩2억 이하임

- 간이과세제도는 과세 매출액에 대한 소비세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공제세액으로 간주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임
 - 이 일정 비율을 “간주매입률”이라 하는바, 전체 사업을 5개의 종류로 구분하고 각각의 구분마다 해당되는 간주매입률을 적용함
 - 제1종 사업(도매업)은 90%, 제2종 사업(소매업)은 80%, 제3종 사업(제조업 등)은 70%, 제4종 사업(기타의 사업)은 60%, 제5종 사업(서비스업 등)은 50%의 간주매입률을 적용함

〈표 Ⅲ-2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소비세 납부세액 계산산식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세액 - 공제가능 매입세액 = 과세 매출액 × 4% - 공제가능 매입세액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출세액 × 간주매입률 = 과세 매출액 × 4%(1 - 간주매입률)

- 일반적인 과세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매입 등의 사실을 기재한

34) <http://www.nta.go.jp/taxanswer/shohi/6505.htm>

장부 및 청구서 등을 보존해야 하나, 간이과세자는 매입과 관계되는 장부 및 청구서 등을 보존할 필요가 없음³⁵⁾

- 일본에는 세금계산서제도가 없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뿐만 아니라 일반과세자 역시 세금계산서와 관계되는 납세사무는 발생하지 않음

〈표 Ⅲ-24〉 일본의 간이과세자 규모

(건, 백만엔)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합계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일반신고	522,467	230,978	1,387,421	9,278,469	1,909,888	9,509,447
간이신고	932,515	235,606	581,347	233,590	1,513,862	469,196
납세신고	1,454,982	466,583	1,968,768	9,512,059	3,423,750	9,978,643
환급신고	37,840	32,768	118,404	2,719,364	156,244	2,752,133

주: 2007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2008년 6월 30일 현재 신고한 과세실적에 기초함

자료: <http://www.nta.go.jp/kohyo/tokei/kokuzeicho/shohi2007/pdf/shohi.pdf>

2) 매입공제세액의 계산³⁶⁾

가) 기본적인 계산방법

- 제1종 사업부터 제5종 사업까지 중 한 종류의 사업만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매입공제세액 계산산식을 나타내면 아래와 같음

〈표 Ⅲ-25〉 한 종류의 사업만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매입공제세액 계산산식

매입공제세액 =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소비세액 - 매출과 관계되는 대가의 반환 등의 금액에 관한 소비세액) × 간주매입률(제1종 사업 90%, 제2종 사업 80%, 제3종 사업 70%, 제4종 사업 60%, 제5종 사업 50%)

35) <http://www.nta.go.jp/taxanswer/shohi/6496.htm>

36) <http://www.nta.go.jp/taxanswer/shohi/6505.htm>

- 제1종 사업부터 제5종 사업까지 중 2종류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매입공제 세액 계산산식을 나타내면 아래와 같음

〈표 Ⅲ-26〉 2종류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매입공제세액 계산산식

$\text{매입세액공제} = (\text{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소비세액} - \text{매출과 관계되는 대가의 반환 등의 금액에 관한 소비세액}) \times$ $\frac{(\text{제1종 사업에 관한 소비세액} \times 90\% + \text{제2종 사업에 관한 소비세액} \times 80\% + \text{제3종 사업에 관한 소비세액} \times 70\% + \text{제4종 사업에 관한 소비세액} \times 60\% + \text{제5종 사업에 관한 소비세액} \times 50\%)}{(\text{제1종 사업에 관한 소비세액} + \text{제2종 사업에 관한 소비세액} + \text{제3종 사업에 관한 소비세액} + \text{제4종 사업에 관한 소비세액} + \text{제5종 사업에 관한 소비세액})}$

나) 계산의 특례

- 2종류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있어 1종류의 사업의 과세 매출액이 전체 과세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간주매입률을 전체 과세 매출액에 대해 적용할 수 있음
 - 한편, 3종류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있어 특정 2종류의 사업의 과세 매출액의 합계가 전체 과세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2종류의 사업 중 간주매입률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 간주매입률을 적용하고, 그 밖의 과세 매출액에 관해서는 2종류의 사업 중 낮은 쪽의 간주매입률을 그 사업 이외의 과세 매출액에 대해 적용할 수 있음

다) 사업을 구분하고 있지 않은 경우

- 2종류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과세 매출액을 사업마다 구분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구분하고 있지 않은 사업 중 가장 낮은 간주매입률을 적용해 매입공제세액을 계산함

3) 간이과세제도의 신고³⁷⁾

- 간이과세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의 전날까지 「소비세간이과세제도선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이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2년간 실액계산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로 변경할 수 없음
 - 또한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을 중지하고 실제금액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단하려고 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의 전날까지 「소비세간이과세제도선택불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단하는 과세기간의 첫날부터 과세구입과 관계되는 장부 및 청구서 등을 보존해야 함

4) 간이과세제도의 사업구분³⁸⁾

- 간이과세제도에서는 사업 형태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5개의 사업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사업의 과세 매출액에 대해 50~90%의 간주매입률을 적용해 매입공제세액을 계산함
 - 사업자가 행하는 사업이 제1종 사업부터 제5종 사업까지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그 사업자가 행하는 과세 자산의 양도 등마다 행함
 - 간주매입률이 적용되는 각각의 사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37) <http://www.nta.go.jp/taxanswer/shohi/6505.htm>

38) <http://www.nta.go.jp/taxanswer/shohi/6509.htm>

〈표 Ⅲ-27〉 간주매입률

사업구분	간주매입률	해당사업
제1종 사업	90%	도매업(다른 사람에게서 구입한 상품을 그 성질, 형상을 변경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
제2종 사업	80%	소매업(다른 사람에게서 구입한 상품을 그 성질, 형상을 변경하지 않고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제1종 사업 이외의 것)
제3종 사업	70%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제조업(제조 소매업 포함), 전기업, 가스업, 열공급업, 수도업을 말하고, 제1종 사업 또는 제2종 사업에 해당하는 것 및 가공임 기타 이와 유사한 요금을 대가로 하는 용역의 제공을 제외함
제4종 사업	60%	제1종 사업, 제2종 사업, 제3종 사업 및 제5종 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음식점업, 금융·보험업 등임 또한 제3종 사업에서 제외되는 가공임 기타 이와 유사한 요금을 대가로 하는 역무의 제공을 행하는 사업 역시 제4종 사업이 됨
제5종 사업	50%	부동산업, 운수통신업, 서비스업(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사업 제외)을 말하고, 제1종 사업부터 제3종 사업까지의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함

자료: <http://www.nta.go.jp/taxanswer/shohi/6509.htm>

4. 뉴질랜드

가. 부가가치세 현황

- 뉴질랜드는 뉴질랜드 국내에서 공급되는 모든 과세재화(토지 및 건물 포함)와 용역 그리고 수입재화에 대해 GST(Goods and Services Tax: 이하 “GST”)를 부과함
 - GST 표준세율은 12.5%이며,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사용함
- 뉴질랜드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GST 특례제도를 두고 있음
 - 등록의무면제(신고·납부의무면제)
 - 현금주의회계제도
 - 반기회계제도

나. 등록의무 면제(신고·납부의무 면제)³⁹⁾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가 없음
 - 직전 12개월간 공급가액(turnover)이 NZD60,000 이하인 경우
 - 향후 12개월간 공급가액(turnover)이 NZD60,000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그러나 아래의 사유로 공장이나 기타의 자본자산을 매각해 공급가액이 NZD6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GST 등록의무가 없음
 - 과세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 과세사업의 규모를 상당히 또는 영구히 줄인 경우 또는
 - 공장이나 자산을 대체하는 경우

- 이 때 “공급가액(turnover)”이란 GST를 제외한 과세공급가액을 말함
 - 면세공급가액(예. 주택의 임대, 이자, 비영리단체가 판매하는 기부 재화 및 용역, 특정한 금융용역)은 제외함

- GST등록을 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의무가 없음
 - 그러나 공급가액이 등록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자발적인 등록이 가능함

〈표 Ⅲ-28〉 GST등록 기준금액 변천

기간	기준금액(NZD)
1990.08.08 이전	24,000
1990.08.08~2000.09.30	30,000
2000.10.01~2009.03.31	40,000
2009.04.01 이후	60,000

자료: Goods and Services Tax 1985 §51(1)(a)

39) <http://www.ird.govt.nz/gst/gst-registering/register-who/>

다. 현금주의회계제도(payments basis)

- 연간 공급가액이 NZD2백만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현금주의회계제도(payments basis)를 적용받을 수 있음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간 공급가액이 NZD2백만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현금주의회계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칙령(Order of Council)에서 정한 비영리단체 및 지방정부
 - 국세청이 특별히 현금주의회계제도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
 - 현금주의회계제도의 기준금액은 2000년 10월 1일 NZD1백만에서 NZD1.3백만으로 인상되었으며, 2009년 4월 1일 다시 NZD2백만으로 인상

〈표 Ⅲ-29〉 뉴질랜드의 GST 회계제도

직전 12개월간 공급가액	선택 가능한 GST 회계제도
NZD2백만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주의회계제도 • 발생주의회계제도 또는 • 혼합형 회계제도
NZD2백만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주의회계제도 또는 • 혼합형 회계제도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칙령에서 정한 비영리단체 및 지방단체는 공급가액이 NZD2백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현금주의회계제도를 사용할 수 있음 • 뉴질랜드 국세청은 과세공급의 성격·가액·수량 및 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회계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현금주의회계제도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음

자료: <http://www.ird.govt.nz/gst/gst-registering/get-ready/>

- 뉴질랜드의 경우 GST의 계산방법으로 발생주의회계제도(invoice basis)와 현금주의회계제도(payments basis), 그리고 혼합형 회계제도(hybrid basis)를 인정하고 있는바, 각 방법의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장단점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III-30〉 GST 회계제도의 유형별 장단점

	계산방법	장점	단점
현금주의 (Payments ba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대가를 지급·수취하는 과세기간에 GST를 납부하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전출납부(cash book)를 쉽게 GST 신고·납부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합한 방법임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때만 GST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장기 신용매출을 하는 경우에 유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자에게 공급대가를 지급한 이후에만 매입 및 경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발생주의 (Invoice ba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는 때 또는 공급대가를 지급·수취하는 때 중 빠른 날에 GST를 납부하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고품을 제외하고 공급자에게 공급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매입 및 경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대가를 받기 전에 GST를 납부해야 함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였으나, 금전출납부에 나타나지 않는 항목에 대해 각 과세기간 말 현재 채권자 및 채무자리스트를 보관해야 함
혼합형 (Hybrid ba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주의 회계제도에 기초해 매입 및 경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 청구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사용해 매출과 소득에 대해 GST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권자 입장에서 조정이 필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전출납부에 나타나지 않는 항목에 대해 과세기간 말 현재 채무자리스트를 보관해야 함

자료: <http://www.ird.govt.nz/gst/gst-registering/get-ready/>

라. 반기회계제도

□ 12개월간 공급가액이 NZD500,000 이하이거나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반기별로 GST의 신고·납부가 가능함

○ 일반적인 경우에는 2개월마다 한 번씩 GST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연간 공급가액이 NZD24,000,000 이상인 사업자는 매월 GST를 신고·납부해야 함

○ 반기신고 기준금액은 2007년 10월 1일부터 2009년 4월 1일까지는 NZD250,000,

2009년 4월 1일부터는 NZD500,000임

- 한편 공급가액이 NZD500,000 이상인 경우에도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반기신고·납부가 가능함
 - 과거에 제때 정확하게 GST를 신고·납부한 경우
 -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모든 GST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 계절적 요인이나 낮은 거래량 또는 고액의 cash flow에 의해 공급가액이 영향을 받는 경우

〈표 Ⅲ-31〉 뉴질랜드의 GST 과세기간

과세기간	내용
2개월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적인 과세기간
매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가 월별신고를 선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적으로 GST를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예. 수출업자) 또는 - 월별신고가 GST 계산에 더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월별신고가 의무화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월간 과세공급가액이 NZD24,000,000 이상이거나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매월 GST를 신고해야 함
6개월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로지 소규모 사업자만이 반기신고를 선택할 수 있음 •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달에 선택할 수 있음 • 공급가액이 NZD500,000 이상인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의 승인하에 계속하여 반기신고를 적용받을 수 있음

자료: <http://www.ird.govt.nz/gst/gst-registering/get-ready/>

5. 체코⁴⁰⁾

가. 부가가치세 현황

- 부가가치세율은 영세율을 포함해 세 가지 종류가 있음
 - 대부분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19%의 표준세율이 적용되나, 일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9%의 경감세율을 적용해 과세함
- VAT 신고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이루어짐
 - 직전 역년의 공급가액이 CZK10백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별신고를, CZK2백만 이하인 경우에는 분기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 공급가액이 CZK2백만을 초과하나, CZK10백만 이하인 경우에는 월별 신고와 분기별 신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체코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VAT 특례제도를 두고 있음
 - 등록의무면제(신고·납부의무 면제)

나. 등록의무 면제(신고·납부의무 면제)

- 12개월의 연속적인 기간 동안 과세공급가액이 CZK1백만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가 없음
 - 과세공급가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자는 그 기준금액을 초과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함
 - 사업자등록은 과세공급가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한 달로부터 세 번째 달의 첫 번째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함
 - 한편 과세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자발적인 등록이 가능함

40) www.ibfd.org

6. 핀란드

가. 부가가치세 현황

- 현재 핀란드에는 22%의 표준세율과 17%와 8%, 두 가지 종류의 경감세율이 존재함
 - VAT는 월별신고가 원칙이며, 예외는 없음
- 핀란드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VAT 특례제도를 두고 있음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환급)

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환급)

- 당해 회계연도(fiscal year)의 매출액이 EUR8,500 이하인 과세자는 그 회계연도 동안 납부한 VAT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음
 - 한편 당해 회계연도의 매출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에 의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 환급세액= $[VAT - (\text{매출액} - 8,500) \times VAT] / 14,000$
 - 과세관청은 과세자가 제출한 신청서나 기타의 설명에 기초해 당해 회계연도의 말에 과세자에게 공제액을 지급함
- 부동산임대료와 같은 특정 항목은 공제액을 계산하는 때 매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함
 - 상기의 공식에 기초해 계산한 공제액이 음(-)의 값을 갖는 경우
 - 해당 과세자가 핀란드에 고정사업장을 갖지 않은 외국인이거나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y)인 경우

7. 그리스

가. 부가가치세 현황

- 그리스에는 세 가지 종류의 부가가치세율이 존재함
 - 표준세율은 19%이며, 식품·의약품·의료장비 등과 같은 생활필수품에는 9%, 서적 및 잡지에는 4.5%의 경감세율을 적용해 과세함
 - 한편 예게 섬 지역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위에서 설명한 부가가치세율에서 30%를 경감해 과세함

- VAT 신고주기는 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회계장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짐
 - 매출액이 EUR150,000 이하인 과세자(유형 A)는 매입장만 작성하면 되며, 분기별로 VAT를 신고해야 함
 - 매출액이 EUR150,001 이상 EUR1.5백만 이하인 과세자(유형 B)는 매출장과 경비장만 작성하면 되며, 분기별로 VAT를 신고해야 함
 - 매출액이 EUR1.5백만을 초과하는 과세자(유형 C)는 복식부기가 의무화되며, 매월 VAT를 신고해야 함

- 그리스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VAT 특례제도를 두고 있음
 - 역내취득에 관한 등록의무 면제(신고·납부의무 면제)
 - 연차신고제도

나. 역내취득에 관한 등록의무 면제(신고·납부의무 면제)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규정돼 있음
 - 부가가치세법상 소규모 사업자란 당해 역년에 과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서 얻은 총수입(total revenue)이 EUR100,000을 초과하지 않고, 공식적 기록(official records)을 보관할 의무가 전혀 없거나 오로지 매입장(purchase ledger)만 보관하면 되는 개

인 또는 파트너십을 말함

- 역내취득(intra-Community acquisition)에 관한 예외조항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는 VAT에 관한 통상적 행정의무에서 면제되는바, 사업자등록이나 VAT의 신고·납부가 필요 없음
 - 소규모 사업자가 통상적인 VAT 과세방식을 선택하는 것 또한 가능하나, 일단 선택하면 5년간 변경이 불가능함
 -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는 소비재 및 신규 교통수단의 역내취득에 한해 적용되는 제한적 규정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함

다. 연차신고제도

- 유형 A에 해당하며, 역내거래를 수행하지 않는 사업자는 2003년 1월 1일부터 연차신고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연차신고제도를 선택한 과세자는 분기별로 VAT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직전 회계연도의 VAT 납부세액에 10%를 가산해 계산한 금액을 분기별로 예납하면 됨
 - 납세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VAT 세액은 연말신고를 통해 정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세부담에 차이는 없음
 - 연차신고제도를 선택한 과세자는 매년 1월에 해당 과세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소 3년 이상 앞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계속하여 VAT를 납부해야 함

8. 헝가리

가. 부가가치세 현황

- 20%의 표준세율 또는 5%의 경감세율을 적용해 과세함
 - 과세자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과세당국에 VAT를 신고·납부해야 함
 -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과세자는 분기별로 VAT를 신고해야 함

- 그러나 해당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연도의 VAT 납부세액이 HUF1백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VAT를 신고해야 함

- 헝가리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VAT 특례제도를 두고 있음
 - 신고·납부의무면제(단, 등록의무는 그대로 유지)
 - 연차신고제도

나. 신고·납부의무 면제

- 헝가리에 사업의 중심지나 통상적인 주거지를 갖고 있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규모 사업자 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직전연도의 사업매출(business revenue)이 HUF5백만을 초과하지 않는 거주자(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이 HUF5백만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VAT면세지위를 신청 가능하나, 여전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는 있음
 - 면세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면세지위의 적용을 희망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말에(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등록과 동시에) 과세당국에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함
- VAT 면세지위 판단을 위한 매출액은 통상적인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는 납세자가 선택한 과세기간을 기초로 계산되며, 아래의 항목은 고려하지 않음
 - 납세자의 기업 활동에 있어 이익창출에 도움이 되는 무형자산의 매각
 - 납세자의 기업 활동에 있어 이익창출에 도움이 되는 무형의 재화 및 기타 가치가 있는 권리의 임대(final letting)
 - 신규 교통수단의 매각
 - 건물용 토지의 매각
 - 면세사업
 - 농업활동을 수행하는 납세자의 보상비

- 한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자 면세지위를 잃게 됨
 - 납세자가 면세지위를 계속하여 적용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 납세자가 법적 승계자에게 매각하였으나, 법적 승계자가 소규모 사업자 과세를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납세자가 소규모 사업자 과세를 위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납세자는 공급에 대해 VAT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대신 경비 또는 매입에 대해 VAT 공제가 불가능하며, VAT의 신고의무 또한 없음
 - 그러나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가 공급, 재화의 수입, 매입자납부방식(reverse charge)이 적용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VAT를 납부해야 함

다. 연차신고제도

- 직전 과세연도에 과세사업에서 얻은 연매출이 HUF8백만을 초과하지 않고, 과세연도의 직전연도의 VAT 납부세액이 HUF1백만을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는 1년에 한 번만 VAT를 신고·납부하면 됨(일반적인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로 VAT 신고·납부)
 - 한편 직전 과세연도의 VAT 납부세액이 HUF 1백만을 초과하나, 과세사업에서 얻은 연매출이 여전히 HUF8백만 이하인 경우, 납세자는 계속하여 연차신고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소규모 사업자가 연차신고 대신 분기별 신고를 원할 경우 납세자는 해당 연도의 마지막 신고 때 이러한 의도를 신고해야 하며, 특별히 월별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의 승인이 필요함
 - 한편 소규모 사업자 면세제도를 적용받는 과세자는 매월 VAT를 신고해야 함

9. 아이슬란드

가. 부가가치세 현황

- VAT 표준세율은 24.5%이나,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7%의 경감세율을 적용해 과세함
 - 일반적인 과세기간은 2개월이나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작은 기업은 지역 세무서의 승인을 득해 이보다 짧은 1개월의 과세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아이슬란드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VAT 특례제도를 두고 있음
 - 연차신고제도

나. 연차신고

- 직전 역년의 연매출이 ISK1.4백만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연차신고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또한 법인 이외의 신규 과세업체가 등록하는 경우 VAT 신고기간은 역년이 되나, 등록 유형에 따라 몇 가지 예외가 존재함

10. 아일랜드

가. 부가가치세 현황

- VAT 표준세율은 21%이나, 특정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13.5% 또는 10%의 경감세율을 적용해 과세함
 - 일반적인 경우에는 2달마다 한 번씩 VAT를 신고해야 함

- 아일랜드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VAT 특례제도를 두고 있음
 - 등록의무 면제(신고·납부의무 면제)
 - 연차신고제도

나. 등록의무 면제(신고·납부의무 면제)

- 연속적인 12개월의 기간 동안 과세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았거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VAT 등록의무를 면제함
 - 그러나 납세자가 원할 경우 자발적인 등록이 가능함
 - 등록 기준금액은 재화에 대해서는 EUR55,000, 용역에 대해서는 EUR27,500임(2006년 5월 1일 이후 동일한 기준금액 적용)

다. 연차신고제도

- 특정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1년에 한 번만 VAT 신고가 가능함
 - 그러나 연차신고의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이 외부에 공표되지 않고 있음
 - 연차신고를 적용받는다 고 하여 사업자가 보관해야 할 기록의 수나 질적 수준이 저하되어서는 안 됨

11. 독일

가. 부가가치세 현황

1) 개요

- 독일의 부가가치세 명칭은 'Umsatzsteuer'임

- 부가가치세는 공동세⁴¹⁾로서 부과주체는 연방, 주, 기초자치단체임
- 과세방법은 우리나라와 같이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음
-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⁴²⁾임(부가가치세법 제1조1항1호 이하 및 제15조)

2) 과세거래(\$1 Steuerbare Umsätze)⁴³⁾

- 부가가치세는 다음의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함
 - 사업자가 국내에서 대가를 받고 행하는 공급과 기타의 용역
 - 재화의 국내수입, 오스트리아의 Jungholz지방과 Mittelberg 지방으로의 수입(수입 부가가치세)
 - 국내에서 EU 역내의 거래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재화(취득부가가치세)

3) 과세표준(\$10, 11 Bemessungsgrundlagen)

- 재화와 용역의 공급 및 역내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거래의 대가, 즉 공급가액임
 - 사업자가 고객의 이름과 계산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일시적인 금액은 대가에 포함되지 않음
- 수입의 경우 과세표준은 관세와 통관비용을 포함한 수입시점의 가액, 즉 관세가격(custom value)임

41) 공동세는 그 세수가 연방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연방, 주, 기초자치단체가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도록 되어 있음

42) 영업이나 직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조1항)

43) 독일 법무부(http://www.gesetze-im-internet.de/ustg_1980/, 2009년 11월 24일 접속)

4) 세율(\$12 Steuersätze)

- 모든 과세대상 매출에 대해 표준세율은 19%를 적용함
 - 식품, 음료, 약, 신문, 책 및 극장·박물관·콘서트홀 서비스, 가축의 사육 및 보유, 식물 등에 대해 경감세율 7%를 적용함
 - 영세율은 주로 수출품과 역내 공급에 적용됨

5) 납부세액 계산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함

나. 등록 및 납부의무 면제(소액부징수제도)

- 독일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루고 있음
 - 사업자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EUR17,500를 초과하지 않거나 당해 연도에 EUR50,000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으며,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의무가 면제됨(부가가치세법 제19조 1항)
 -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면 소규모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필요⁴⁴⁾
 - 독일 내에서의 EU 역내취득(intra-Community acquisition)이 EUR12,500을 초과하는 경우
 - 신규 교통수단의 EU 역내 공급
 - 납세자가 자신의 매입에 대해 일반과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국내공급에 대한 비과세규정, 면세 포기, 계산서에 부가가치세액 별도 표시, 부가가치세 사업자 확인번호의 기재 및 매입세액공제의 규정도 적용하지 않음

44) 소비세 물품(excise goods) 및 신규 교통수단의 EU 역내 취득에 적용되는 특별규정

- 매입 및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가 허용되지 않음
- 계산서에 별도로 부가가치세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함
- 소규모 사업자 적용은 5년간 당해 사업자를 구속하며, 포기의사를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음(부가가치세법 제19조 2항)

다. 표준율 제도

1) 개관

- 연방재무부가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3항에서는 지난 역년의 매출액이 EUR61,356를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평균적인 표준율(§ 23 Allgemeine Durchschnittsätze)의 적용을 허용하고 있음⁴⁵⁾
 - 연방재무부는 과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납부세액 및 이의 계산을 위한 기준으로 연방상원의 승인을 얻어 평균 부가가치율을 정함(부가가치세법 제23조 1항)
 - 평균적인 표준율에 의해 산정한 세액은 이에 의하지 않고 법률에 따라 계산한 세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음(부가가치세법 제23조 2항)

가) 평균적인 표준율 신청

- 평균적인 표준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세무서에 평균적인 표준율에 의해 과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⁴⁶⁾
 - 평균적인 표준율의 적용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늦어도 매 역년의 최초 예정신고기한⁴⁷⁾ 종료일 이후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 사업자가 세무서에 신청하여 평균적인 표준율을 적용받으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

45) 독일 법무부(http://bundesrecht.juris.de/ustdv_1980/_69.html)

46) 최원석, “부가가치세제도 선진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9, pp. 16~20 발췌 요약

47) 기본적으로 독일에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Voranmeldungszeitraum)은 역년의 매 분기로 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18조 2항).

터 소급하여 이루어짐(부가가치세법 제23조 3항)

- 평균적인 표준을 신청은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신청의 시기는 결정세액의 변경이 불가능한 시점까지임
- 철회 후 다시 평균적인 표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이 경과하여야 함
- 철회의 효과는 동 사업연도의 개시와 함께 적용됨

나) 업종별 평균적인 표준을

□ 독일의 평균적인 표준율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는 업종구분을 크게 4분류로 하고 그 4분류 안에서 구체적인 업종으로 세분하고 있음

○ 4분류는 수공업, 소매업, 기타, 자유직업소득자로 구분하고 있음

- 수공업은 다시 23개 업종, 소매업은 18개 업종, 기타 사업은 6개 업종, 그리고 자유직업소득자는 7개 업종으로 구분되어 총 54개의 다른 평균적인 표준율을 가지는 업종으로 구분되어 과세함

□ 아래의 표는 당해 사업체의 전체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데 적용하는 업종별 평균적인 표준율을 54업종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당해 사업체의 매입세액의 일부분을 계산하는 데 적용하는 업종별 평균적인 표준율을 또 6업종으로 세분하고 있음

〈표 Ⅲ-32〉 전체 매입세액(input tax)의 계산을 위한 평균적인 표준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1항 부록)

업종	평균적인 표준율
수공업	1. 제빵업 : 매출액의 5.4% 2. 목공업과 가구업 : 매출액의 9.0% 3. 장식, 예술 및 수선용 철공업 : 매출액의 7.5% 4. 제분업 : 매출액의 5.2% 5. 인쇄업 : 매출액의 6.4% 6. 전기설비 : 매출액의 9.1% 7. 타일, 마루타일업과 기타바닥 및 이의 접착업 : 매출액의 8.6% 8. 이미용업 : 매출액의 4.5%

〈표 Ⅲ-32〉의 계속

업종	평균적인 표준율
수공업	9. 정원관리업 : 매출액의 5.8% 10. 창문업 : 매출액의 9.2% 11. 건축 및 토목 : 매출액의 6.3% 12. 건축관련철공업, 가스설비업 및 수도설비업 : 매출액의 8.4% 13. 도색업 및 도배업 : 매출액의 3.7% 14. 실내 장식업 : 매출액의 9.5% 15. 여성용 모자제조업 : 매출액의 12.2% 16. 차량 수리업 : 매출액의 9.1% 17. 철물제조·수리업과 용접업 : 매출액의 7.9% 18. 재단 및 재봉업 : 매출액의 6.0% 19. 제화업 : 매출액의 6.5% 20. 석상조각업과 석공업 : 매출액의 8.4% 21. 모르타르 및 석회칠업 : 매출액의 4.4% 22. 소면사업 및 소모사업 : 매출액의 2.0% 23. 목수업 : 매출액의 8.1%
소매업	1. 화훼 및 식물 : 매출액의 5.7% 2. 연료 : 매출액의 12.5% 3. 의약품: 매출액의 10.9% 4. 전기기구, 조명기기, 라디오, 텔레비전 수상기 및 축음기 : 매출액의 11.7% 5. 자전거 및 모터 부착자전거 : 매출액의 12.2% 6. 생선 및 생선가공품 : 매출액의 6.6% 7. 감자, 야채, 과일 및 열대과일: 매출액의 6.4% 8. 라커, 물감 및 기타 도료 : 매출액의 11.2% 9. 우유, 유제품, 유지방 제품과 계란 : 매출액의 6.4% 10. 식료품과 기호품 : 매출액의 8.3% 11. 의류 : 매출액의 12.3% 12. 친환경식품 : 매출액의 8.5% 13. 양화업 : 매출액의 11.8% 14. 과자류 : 매출액의 6.6% 15. 각종 섬유제품 : 매출액의 12.3% 16. 동물과 동물용품 :매출액의 8.8% 17. 오락용 잡지 및 신문 : 매출액의 6.3% 18. 야생동물·조류 및 가금육 : 매출액의 6.4%
기타영업	1. 아이스크림 가게 : 매출액의 5.8% 2. 민박업소(펜션포함) : 매출액의 6.7% 3. 여관 및 음식점 : 매출액의 8.7% 4. 건물 및 창문청소 : 매출액의 1.6% 5. 승용차로 행하는 여객운송 : 매출액의 6.0% 6. 세탁소 : 매출액의 6.5%

〈표 III-32〉의 계속

업종	평균적인 표준율
자유직업소득자	1. a) 조각가·조소가 : 매출액의 7.0% b) 그래픽전문가(상업그래픽전문가 제외) : 매출액의 5.2% c) 화가 : 매출액의 5.2% 2. 연극, 영화, 라디오방송, 텔레비전방송과 영상 및 음반제작에 필요한 역무를 독립적인 지위에서 협력·공급하는 자연인 : 매출액의 3.6% 3. 대학교원 : 매출액의 2.9% 4. 저널리스트 : 매출액의 4.8% 5. 작가 : 매출액의 2.6%

자료: 독일 법무부(http://bundesrecht.juris.de/ustdv_1980/anlage_103.html)

〈표 III-33〉 일부 매입세액(input tax)의 계산을 위한 평균적인 표준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2항 부록)

업종	평균적인 표준율
	1. 건축기사 : 매출액의 1.9% 2. 수제 노끈제조 : 매출액의 3.2% 3. 변리사 : 매출액의 1.7% 4. 변호사 및 공증인 : 매출액의 1.5% 5. 골뚝청소부 : 매출액의 1.6% 6. 회계업무전문종사자 : 매출액의 1.7%

자료: 독일 법무부(http://bundesrecht.juris.de/ustdv_1980/anlage_103.html)

다) 비영리법인의 평균적인 표준율(부가가치세법 제23a조)

□ 법인세법 제5조 1항 9호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의 계산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평균적인 표준율은 다음과 같음

- 가장 및 결산의무가 없는 법인, 사단 및 재단은 납세의무가 있는 매출의 7%의 평균적인 표준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며, 추가적인 매입세액공제는 인정되지 않음
 - 단, 수입 및 EU 역내 취득에 대한 것은 제외함(부가가치세법 제23a조 1항)
 - 위의 평균적인 표준율 적용 제한은 수입 및 EU 역내 취득을 제외한 납세의무가 있는 매출이 직전사업연도 기준 35,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임(부가가치세법 제23a조 2항)

- 이 평균적인 표준을 적용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늦어도 매 역년의 최초 예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는 최소 5개 사업연도 동안 유효하나 동 신고는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하는 경우 동 사업연도의 개시와 함께 적용됨(부가가치세법 제23a조 3항)

라) 농업 및 임업의 평균적인 표준율(부가가치세법 제24조)

- 농업 및 임업에 대한 평균적인 표준율은 다음과 같음
 - 제재소(sawmill)의 생산물품을 제외한 임업 생산물품 공급의 경우 매출액의 5.5%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1, 2항에 포함되지 않는 제재소의 생산물품, 음료와 알코올음료 및 기타의 용역의 경우 매출액의 19%
 - 이외의 기타 거래의 경우 매출액의 10.7%

- 사업자는 당해연도 개시 10일 이내에 직전연도 매출에 대해 평균적인 표준율에 의해 과세하는 대신 부가가치세의 일반적인 규정에 의해 과세(일반과세자)하여 줄 것을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음
 - 당해 신청은 5년 이상 해당 사업자를 구속하며, 신청한 사업자는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의 효력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소급됨(부가가치세법 제24조 4항)

라. 현금주의회계제도

- 현금주의(cash basis)에 의한 과세 허용(부가가치세법 제20조)
 - 현금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직전연도 연간 공급대가가 250,000유로⁴⁸⁾를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 과세당국으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은 사업자
 -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과 같은 자유직업종사자(소득세법 제18조 1항)

48)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250,000유로 대신 500,000유로 적용함

12. 호주

가. 부가가치세 현황

1) 개요

□ 호주의 부가가치세는 Goods and Service Tax(GST)임⁴⁹⁾

- GST를 규율하는 법률은 ‘A New Tax System (Goods and Services Tax) Act 1999’로 1999년 6월 28일에 통과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음
- 과세방법은 우리나라와 같이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음
-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⁵⁰⁾임(부가가치세법 제1조1항1호 이하 및 제15조)
- 일부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GST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못함
- 부가가치세는 국세로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에 관련 세액을 납부함

2) 과세거래

□ GST는 다음의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함

- GST는 일반소비세적인 성격으로 사업자가 국내에서 대가를 받고 행하는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의 거래는 과세대상이 됨
- 재화의 국내수입(수입부가가치세)

49) Australian Master Tax Guide, p.1617, CCH, 2009

50) 영업이나 직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조1항)

3) 과세표준

- GST의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taxable supply)임
 - 공급가액은 GST가 포함된 공급액의 10/11에 해당하는 금액임⁵¹⁾
 - 공급(supply)이란 모든 형태의 공급을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됨⁵²⁾
 - 재화와 용역의 공급, 정보의 제공(provision), 물적 재산의 인도(surrender) 등

4) 세율

- 모든 과세대상 매출에 대해 단일세율로 10%를 적용함
 - 영세율은 주로 수출품, 진료, 의약품, 교육, 종교, 자선사업, 물, 어린이 보호용품 등에 적용됨
 - 면세 대상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와 주거용 임대료임

5) 납부세액 계산

- 납부세액(Net GST) = 매출세액(GST collected on sales) - 매입세액(GST credits)
 - 매출세액은 면세공급(input taxed supply)이나 영세율공급(GST free supply)이 아닌 공급가액에 10% 세율을 곱하여 계산함
 - 만약, 공급액에 GST가 포함된 경우에는 10/110을 곱한 가액임
 -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매입액에 세율 10%를 곱한 가액임
 - 만약, 공제가능 매입액에 GST가 포함된 경우에는 10/110을 곱한 가액임
 - 경감공제세액(reduced credits) : 일반적으로 금융서비스의 공급은 면세임. 따라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음. 하지만, 일부 금융서비스의 공급자는 매입세액의 75% 까지 공제할 수 있음⁵³⁾.

51) Sec. 9-75 GSTA(<http://www.austlii.edu.au/au/journals/JATax/2000/18.html#Heading20>)

52) Sec. 9-10 GSTA

53) GST Rulings GSTR 2004/1, 2006/3

- 호주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특례제도를 두고 있음
 - 등록 및 납부의무 면제(신고·납부의무 면제)
 - 연차회계제도(annual accounting)
 - 현금주의회계제도(accounting for GST on a cash basis)

나. 등록 및 납부의무 면제⁵⁴⁾

- 일반적으로 GST 등록사업자는 과세 대상 매출에 대해 전단계 사업자로부터 GST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Tax Invoice)를 발행해 주어야 함
 - GST Credit(매입세액)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보관하여야 함
 - GST를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GST 매출액이 일정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다음과 같은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 GST 매출액(turnover)이 \$75,000(비영리기구의 경우 \$150,000) 미만이면 사업자 등록 및 납부의무가 면제됨
 - 다만, 요금을 받고 택시 또는 리무진을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GST 매출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함
 - Fuel Tax Credits를 청구하기 위해서도 GST 등록을 하여야 함

-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매월 검토가 이뤄져야 함
 - 만약 매출액이 소규모 사업자 기준금액에 도달한 경우 21일 안에 세무서에 GST 등록의무를 하여야 함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GST 매출액이 \$75,000(비영리조직의 경우 \$150,000) 이상이라

54) GST for small business, Australian Taxation Office, 2009

보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 당월과 직전 11개월의 매출액의 합계가 \$75,000 이상 되는 경우 또는
- 당월과 향후 11개월의 매출액의 합계가 \$75,000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⁵⁵⁾

납세자 스스로 GST 등록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등록을 하게 되면 최소 1년 이상 등록 상태를 유지해야 함

다. 연차회계제도⁵⁶⁾

호주에서 GST를 계산하고 신고·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월별, 분기별, 연 1회가 있음

1) 월별 신고 및 납부

- GST 매출액(turnover)이 \$20백만 이상인 경우 매월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
 - BAS(Business Activity Statement: 사업활동보고서)는 전자(electronically)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매출액과 상관없이 다른 사업자도 원하면 GST 월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함

2) 분기별 신고 및 납부

- GST 매출액(turnover)이 \$20백만 미만인 경우 분기별로 GST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으며, 방법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져 있음
 - (Option 1) 분기별로 GST를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은 GST 매출액(turnover)이 \$20백만을 초과하지 않는 모든 사업자가 가능함

55) 추정 매출액 산정시 사업용 자산의 판매(자본 자산 등), 사업의 영구적인 축소 또는 중단에서 발생하는 처분가액 등은 고려하지 않음

56) 호주 국세청(<http://www.ato.gov.au/businesses/content.asp?doc=/content/00182753.htm&page=6&H16>)

- (Option 2) 분기별로 GST를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되 연간 GST 정보보고서 (annual GST information report)를 제출함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실제 거래징수 및 지급한 GST와 총매매에 관한 사항은 각 분기별로 신고하고, 영세율 대상거래, 자본적 및 비자본적 매입 등에 관한 GST 정보는 연 1회 신고함
- (Option 3) 연간 매출액(관련 사업체의 매출액 포함)이 \$2백만을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는 BAS(Business Activity Statement: 사업활동보고서)⁵⁷⁾ 제출을 월별, 분기별, 연 1회로 선택할 수 있음⁵⁸⁾

〈표 Ⅲ-34〉 호주의 예정고지납부제도

적용 요건	고지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고지납부제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20백만 이하의 연간 매출액 기준 외에 다음을 충족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ST 목적상 매월 사업활동보고서를 신고해야 하는 자가 아니어야 함 · 예를 들어 매출액이 \$20백만을 초과하는 자는 매월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예정고지납부제도의 선택이 불가능함 - 최소 2분기(또는 8개월) 이상 활동보고서를 신고하여 온 자 - 이전에 제출했던 모든 활동보고서가 기준에 부합하는 자 - 직전연도 연간기준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매출세액보다 크면 안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매출액이 \$2백만을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는 3개월 단위로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번거로우므로 연중에는 예정신고 없이 국세청이 예정고지납부하는 세액을 분기 또는 반기별로 납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산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특별한 전문가 (예를 들면 작가, 발명가, 행위예술가, 운동선수 등) · 가장 최근 사업연도에 이러한 사업에서 얻은 순소득이 \$1 이상 되는 경우 - 이 외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국세청이 예정 고지하는 세액을 납부함 - 실제 GST와 예정고지납부세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연말 확정신고시 정산이 이루어짐 - 예정고지납부세액 총액이 당해 연도에 납부해야 할 실제 GST 세액 이상이면 납세자가 예정고지납부 세액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나, 변경 후 납부하는 금액이 실제 GST의 85% 이하이면 가산세가 부과됨

자료: 호주 국세청(<http://www.ato.gov.au/content/downloads/n4238072007.pdf>)

57) 납세의무(GST 납부 및 환급요청 등)를 위해 국세청에 사업활동에 대해 보고하는 양식

58) <http://www.ato.gov.au/businesses/content.asp?doc=/content/00182753.htm&page=5&H5>

- GST를 분기별로 계산하여 국세청에 납부하고 연 1회 GST 신고함(예정고지 납부 제도)
- 신고는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지만, 국세청이 예정고지한 4번의 중간예납이 필요함
- 직전연도 실적에 기초하여 예정고지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자가 사업개시 시점부터 바로 예정고지납부제도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함
- 신규사업자의 경우 2분기 이상 사업활동보고서를 제출하고 두 번째 분기에 국세청에 GST를 납부하기 전까지는 동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함
- 일단 예정고지납부제도를 선택하면 다음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는 이를 계속 적용해야 함

3) 연 1회 신고 및 납부

- GST 등록 및 납부의무 면제인 GST 매출액(turnover)이 \$75,000(비영리기구의 경우 \$150,000) 미만인 사업자가 GST를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연 1회 GST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함⁵⁹⁾

4) 신고 및 납부기간

- 월별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월 마지막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사업활동보고서를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분기별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음
 - 중간예납은 9월(7월, 8월, 9월) 분기는 10월 28일까지, 12월(10월, 11월, 12월) 분기는 2월 28일까지, 3월(1월, 2월, 3월) 분기는 4월 28일까지, 6월(4월, 5월, 6월) 분기는 7월 28일까지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연 1회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납부기한일 또는 2월 28일까지 연간 GST 정

59) Report your GST once a year(NAT 12906)

보보고서(annual GST information report)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라. 현금주의회계제도

1) 개요

- 현금주의회계제도는 거래의 발생시점이 아니라 거래대가인 현금의 수취·지급시점에 기초해 GST를 계산하는 회계방식을 말함
 - 매출에 대한 GST(매출세액)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하며, 매입에 대한 GST(매입세액)는 공급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음

〈표 Ⅲ-35〉 발생주의회계와 현금주의회계제도 비교

현금주의회계제도	발생주의회계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하는 때 GST를 납부함 • 공급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때 GST를 공제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자신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 GST를 납부함 • 아직 공급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신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GST를 공제받음

현금주의회계제도 예시: A서점은 GST 등록한 도매업으로 B서점에 책을 팔고 (매출)세금계산서를 2009년 12월 17일 교부함. B서점은 2010년 1월 14일에 매입대금을 지불함

A서점 GST 신고:

- 1) 월별 신고의 경우: 1월 사업활동보고서를 2월 21일까지 신고함
- 2) 분기별 신고의 경우: 3월(1월, 2월, 3월) 분기 사업활동보고서를 4월 28일까지 신고함

자료: GST for small business, Australian Taxation Office, p.19, 2009

2) 적용요건

□ GST 계산시 현금기준 적용⁶⁰⁾

- 일반적인 경우에는 발생기준(accrual basis)으로 GST를 계산해야 함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기준(cash basis)으로 GST 계산이 가능함
 - 매출액(관련 사업체의 매출액 포함)이 \$2백만을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 현금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하는 자
 - 매출액과 관련없이 과세당국으로부터 현금기준 사용을 승인받은 기업
 - 국립학교, 자선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마. 연간기준으로 개인적인 사용분을 배분

-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연간기준으로 개인적인 사용분을 배분할 수 있음⁶¹⁾
 -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적인 목적과 개인적인 목적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적인 목적을 위해 구입하는 분에 한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업활동보고서의 제출 시점마다 이에 근거하여 개인적인 사용분을 추정하여 매입세액 공제금액에서 차감해야 함
 - 그러나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면 전체 GST를 공제받은 후 연간 기준으로 개인적인 사용분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함
 - 즉, 사업활동보고서의 제출 시점마다 매입세액불공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만 매입세액불공제 금액을 조정하면 됨
 - 연간기준으로 개인적인 사용분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연간 매출액(관련 사업체의 매출액 포함)이 \$2백만을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해야 함
 - 예정고지납부제도에 의해 GST를 납부하는 자 또는 1년에 한 번씩 GST를 신고하는 자가 아니어야 함

60) Australian Master Tax Guide, p.1,621, CCH, 2009

61) 호주 국세청(<http://www.ato.gov.au/content/downloads/n12877072007.pdf>)

13. 캐나다

가. 부가가치세 현황⁶²⁾

1) 개요

- 캐나다의 부가가치세는 일반 판매세(The Goods and Service Tax)와 판매세(Harmonized Sales Tax)로 구성됨
 - GST는 연방(중앙)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화 구입이나 서비스, 용역의 제공 등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며 HST는 연방세와 주세를 합친 세금임

- 연방정부의 부가가치세제는 Goods and Services Tax(GST), 지방정부의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Provincial Sales Tax(PST)라고 불림
 - 지방정부 중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Newfoundland and Labrador), 노바스코샤 주(Nova Scotia), 뉴브런즈윅 주(New brunswick)는 각 주의 PST와 연방정부의 GST를 통합하여 Harmonized Sales Tax(HST)로 일괄 과세함⁶³⁾
 - 지방정부 중 British Columbia의 경우 Social Service Tax라고 함

- 캐나다의 GST 과세방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Input tax credit)이지만, PST는 부가가치세보다 소비세에 가까워 최종판매가격에 일정비율로 부과
 -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적용받기 위해서 사업자는 캐나다 국세청에 GST 등록을 하여야 함

- GST의 경우 부과주체는 연방정부이고 PST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임
 - HST를 적용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의 적용세율과 GST세율을 합하여 징수함

62) 캐나다 국세청(<http://www.cra-arc.gc.ca/tx/bsnss/tpcs/gst-tps/gnrl/menu-eng.html>)

63) BC주와 온타리오 주는 PST와 GST를 통합한 HST로 변경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돼 2010년 7월 1일 도입됨

- 지방정부 중 Alberta, Northwest Territories, Yukon Territory와 Nunavut는 PST를 도입하고 있지 않음

2) 과세거래

-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 재화의 수입
 - GST/HST는 상표, 특허권,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는 디지털제품 등의 무형자산에도 과세됨

3) 과세표준

- GST와 HST의 과세표준은 국내의 재화와 용역의 판매가격(공급가액)임

4) 세율

- 영세율(zero rate)과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하여 GST의 일반세율(General GST rate)⁶⁴⁾은 5%가 적용되며, HST의 세율은 13%임
 - HST의 13% 세율은 연방부분 5%와 지방부분 8%로 나뉨
 - 영세율 적용 항목 : 식료품, 특정 의약품과 의료설비, 수출품, 특정 농수산물, 국제 운송용역, 해외금융서비스, 지방정부에 제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
 - 면세 항목 : 주거비용, 치과 및 의료서비스, 법무지원용역, 교육서비스, 중고 주택판매(비사업용토지 포함), 국내금융서비스, 등록된 비영리단체·정부(지방정부 포함)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 통행료
- PST는 퀘벡(Quebec) 주와 프린스아일랜드에드워드(Prince Edward Island)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GST 과세 전에 판매가액에 부과하며, GST도 PST 과세 전의 판매가액에 부과함

64) 2008년 1월 1일 이전에는 GST 6%, HST 14%로 각각 1%씩 인하하였음

- 다만, 퀘벡 주와 프린스아일랜드에드워드 주는 PST가 GST를 포함한 판매가액에 부과됨
- PST의 세율은 지방정부별로 다양하며 5~10%의 범위 내에 있음

〈표 Ⅲ-36〉 캐나다의 PST 세율

구분	세율(%)
Newfoundland and Labrador, Nova Scotia, New Brunswick	13% HST
British Columbia	7.0
Prince Edward Island	10.0
Quebec	7.5
Ontario	8.0
Manitoba	7.0
Saskatchewan	5.0
Alberta, Northwest Territories, Yukon, Nunavut	no PST

자료: <http://www.taxtips.ca/pst/pstrates.htm>

5) 납부세액 계산

- GST의 납부세액은 전단계세액공제법(Input tax credit)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영세율(Zero rate) 사업자는 매입세액 금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지만, 면세(exemption)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 불가

나. 등록 및 납부의무 면제(소액부징수제도)

- 다음의 기준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자(small supplier)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의무가 면제됨
 -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 및 기업(partnership or corporation)인 경우
 - 과세매출액(total revenue from taxable supplies)이 직전 4분기 동안 연속해서

CAD30,000 이하인 경우

- 공공서비스 기관(public service body)인 경우
 - 과세매출액(total revenue from taxable supplies)이 직전 4분기 동안 CAD50,000 이하인 경우
 - 공공서비스 기관(public service body)에는 자선단체, 비영리법인, 학교 및 병원 등이 해당함
- 단, 택시와 리무진을 공급하는 경우 소규모 사업자 특례와 무관하게 반드시 등록의 무가 있음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관련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할 의무 또한 없음

- 등록의무 기준금액에 미달할지라도 등록을 원한다면 자발적 등록(Voluntary Registration)이 가능함
 - 자발적 등록의 경우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철회가 가능함

다. 간편계산제도⁶⁵⁾

1) 개요

-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자(small businesses)는 부가가치세 간편계산제도(The Quick Method of accounting)의 적용이 가능함⁶⁶⁾
 - 소규모 사업자는 일반 과세방식(regular method)과 간편계산방식 가운데 자신이

65) RC4058(Quick Method of accounting for GST/HST), 캐나다 국세청

66) 간편계산제도 적용 배제 업종은 다음과 같음

- 변호사, 회계사, 금융 컨설턴트, 보험계리인, 병원, 지자체, 대학, 비영리단체 등을 포함하여 예외로 규정된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소규모 사업자(small businesses)의 요건

- 1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한 자
- 영세율 적용 대상을 포함한 연간 공급대가(GST/HST 포함된 대가)가 CAD200,000 이하인 경우
 - 계속되는 5개 분기 중 1~4분기의 공급대가 합계 또는 2~5분기의 공급대가 합계 중 하나가 CAD200,000 이하이면 간이과세 적용 가능

〈표 Ⅲ-37〉 간편계산자 1역년의 공급대가 산정방법

분기	판매금액(CAD)	
	1분기: 2009년 6월 30일	39,000
2분기: 2009년 9월 30일	59,000	59,000
3분기: 2009년 12월 31일	64,000	64,000
4분기: 2010년 3월 31일	35,000	35,000
5분기: 2010년 6월 30일		43,000
	197,000	201,000

자료: <http://www.cra-arc.gc.ca/E/pub/gp/rc4058/rc4058-e.html>(캐나다 국세청)

□ 캐나다에서 등록된 소규모 사업자(small businesses)로서 부가가치세 간편계산제도를 적용받는 규모는 99,450명이며 이는 전체 사업자 수 대비 3.5%를 차지하고 있음

〈표 Ⅲ-38〉 간편계산제도 적용자 규모

(단위: 명, %)

사업연도	간편계산자		전체 사업자	
	인원 수	비율	인원 수	비율
2003-04	99,450	3.5	2,834,360	100

자료: Compendium of GST/HST Statistics, 캐나다 국세청, 2004

〈표 Ⅲ-39〉 2003-04 매출액 구간별 등록인원 현황

(단위: CAD, 명, %)

매출액	전체 사업자	
	인원 수	비율
Not Stated	521,670	18.4
0 ~ 29,999	976,510	34.5
30,000 ~ 199,999	790,270	27.9
200,000 ~ 499,999	255,620	9.0
500,000 ~ 999,999	118,490	4.2
1,000,000 ~ 1,999,999	74,990	2.6
2,000,000 ~ 5,999,999	59,370	2.1
6,000,000 ~	37,440	1.3
Total	2,834,360	100.0

자료: Compendium of GST/HST Statistics, 캐나다 국세청, 2004

2) 간편계산제도의 포기

- 간편계산자는 간편계산제도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음
 - 간편계산을 포기한 사업자가 다시 간편계산을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간편계산 포기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적어도 1년이 경과된 이후에나 가능함

3) 간편계산 부가가치세율

- 사업장이 속한 주(州)와 업종에 따라 간편계산 적용 부가가치세율의 차이가 있음
 - 간편계산 적용 부가가치세율은 과세대상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이 participating province 또는 non-participating province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상이함
 - participating province: Nova Scotia, New Brunswick, Newfoundland and Labrador로써 PST와 연방정부의 GST를 통합하여 Harmonized Sales Tax(HST)로 일괄 과세하는 주(州)
 - non-participating province: participating province 이외의 지역

- 부가가치세율이 다른 participating province와 non-participating province에서 여러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하나 이상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음
- 간편계산제도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Input Tax Credit)의 적용이 불가능하지만, CAD30,000까지의 과세공급액에 대해서는 1%의 공제(Credit)를 적용함
- 간편계산제도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매출과 매입에 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할 필요가 없음
 - 그러나 간편계산에 관한 기록(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와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세의 기록) 등에 관한 내용을 6년간 보존하여야 함

〈표 Ⅲ-40〉 간편계산자의 적용 부가가치세율(The Quick Method remittance rates)

구분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non-participating province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participating province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non-participating province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participating province
		2006년 7월~2007년 12월		2008년 1월~	
판매를 위한 재화의 구입 ¹⁾ (businesses that purchase goods for resale) • 골동품상(antique dealer) • 식료품 및 편의점(grocery and convenience store) • 아트숍(art and craft shop) • 부티크 및 장식품점(boutiques and novelty stores) • 가스충전소(gas service station) 등	Supplies made in a non-participating province	2.2%	0%	1.8%	0%
	Supplies made in a participating province	9%	4.7%	8.8%	4.4%
서비스의 제공 (businesses that provide services) • 배달업 • 세탁업 • 자동차 수리 • 사진기사 등 기타서비스업	Supplies made in a non-participating province	4.3%	2.6%	3.6%	1.8%
	Supplies made in a participating province	11%	9.4%	10.5%	8.8%

주: 1) 판매를 위한 재화의 구입금액(GST/HST를 포함)이 사업자의 1역년 공급대가의 40% 이상이어야 함

자료: RC4058(Quick Method of accounting for GST/HST), 캐나다 국세청

- non-participating province 주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해 재화를 구입하고 non-participating province에서 재화의 판매(공급)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8%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함
 - 간편계산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Ⅲ-41〉 간편계산의 예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의 고정사업장은 British Columbia에 위치하고 모든 판매도 British Columbia에서 발생함. A는 2007년에 간이과세제도가 적용가능한 분기 신고·납부 사업자였으며 2008년에 업종변경은 없었음 ⇒ non-participating province 사업장을 통해 재화를 구입하고, non-participating province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계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ST를 포함한 재판매를 위한 재화의 총구입금액(Total purchases of goods for resale) \$ 75,000 • GST를 포함한 1역년의 공급대가(Total annual taxable sales) \$ 160,000 • 판매대 구입비율 \$75,000/\$160,000= 47% * 판매를 위한 재화의 구입금액(GST/HST를 포함)이 사업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40% 이상 조건을 충족함 • 1분기(1~3월) 공급대가 \$ 44,000 • 1.8%의 부가가치율 적용 \$ 44,000×1.8%= \$792 • \$ 30,000에 대한 1% 공제 \$ (300) • 1분기납부세액 \$ 492

라. 연차회계제도

- 일반적인 경우 분기마다 GST를 신고해야 하지만, 연차회계제도를 이용할 경우 1년에 한번만 GST를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GST 신고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캐나다에서는 직전연도 연간 과세 공급가액(taxable supplies amount)을 기준으로 신고주기를 구분하고 있음⁶⁷⁾
 - 직전연도 공급가액(영세율 포함)이 CAD1,500,000 이하인 경우 신고주기(Reporting periods)의 연장으로 연단위 신고가 가능함

67) <http://www.cra-arc.gc.ca/E/pbg/gf/gst20/README.html>

〈표 Ⅲ-42〉 캐나다의 신고주기

직전연도 공급가액	법정 신고주기	선택가능 신고주기
CAD1,500,000 이하	연	분기, 월
CAD1,500,000 ~ 6,000,000	분기	월
CAD6,000,000 초과	월	-

마. 기타 특례제도

□ 분할납부(Instalment payments)

- 연간 신고납부 대상자로서, 순납세액(net tax)이 CAD3,000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해에 분기별 분할납부가 가능함
 - 분할 납부세액 계산시 직전연도 납부세액 또는 당해연도 추정세액 중 작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음
 - 2008년 납부세액 \$4,000, 2009년 추정세액 \$3,200일 경우 $\min[\$4,000/4, \$3,200/4]$ 즉, \$800을 1기 납부기한인 2009년 4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분할납부를 신청하였지만 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할 경우 과세연도 말에 미납부 금액에 대하여는 연 4%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추가납부하여야 함

14. 오스트리아⁶⁸⁾

가. 부가가치세 현황

□ 부가가치세율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음

-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20%의 표준세율이 적용되나, 일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10%, 12%, 19%의 경감세율을 적용해 과세함

68) www.ibfd.org

- 식음료, 농산품, 책, 식물 등 특정 재화는 10%의 경감세율 적용
- 와인, 농가 제조 발효주는 12%의 경감세율 적용
- Jungholz and Mittelberg(customs exclusion zones)의 재화 공급은 19%(10%, 12%의 세율 적용은 제외)의 경감세율을 적용

나. 등록 및 납부의무 면제

- 오스트리아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EUR30,000를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특례제도(special scheme for small business)를 적용받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 됨
 -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계산시 면세거래는 포함되지만 사업양도,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고정자산의 일부 자가공급은 포함되지 않음
 - 5년 내에 과세기간 동안 매출액이 면제 기준금액 EUR30,000을 한 번 초과하는 것까지는 부가가치세 납부면제가 허용되는데 초과 한도는 면제 기준금액의 15%까지임

다. 소규모 사업자 매입세액공제

- 오스트리아에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직전연도 매출액이 EUR220,000을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공제매입세액을 전체 매출액에 1.8%의 고정률(flat rate)을 곱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전체 매출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공급을 제외함
 - 취득원가가 EUR1,100을 초과하는 자본재화, 재고품, 원재료, 재공품, 원료 및 특정 임금의 경우 별도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함

라. 현금주의회계제도(cash basis)

- 오스트리아에서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발생주의회계제도로 계산하나 연간 매출액이 EUR110,000를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현금주의회계제도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함
 - 한편, 특정 사업자(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공익 사업자)의 경우 소규모 사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현금기준으로 계산함

마. 신고·납부 간소화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다음 과세연도 3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해야 하는데 연간 매출액이 EUR30,000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일반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 연간 과세거래액이 EUR7,500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할 의무가 없음
- 부가가치세는 월마다 다음 달 15일까지 예납하여야 하는데 직전연도 매출액이 EUR30,000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분기별로 예납하는 것이 가능함

15. 벨기에⁶⁹⁾

가. 부가가치세 현황

- 대부분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표준세율 21%를 적용함
 - 6%의 경감세율은 식료품, 달걀, 우유, 꿀, 가축, 과일, 육류 등의 식료품 등에 적용함 (Royal Decree 20)
 - 12%의 경감세율은 마가린, 타이어, 방송수신료 등에 적용함(Royal Decree 20)

69) www.ibfd.org

- 벨기에에서는 과세매출이 일정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특례제도를 두고 있음
 - 연간 과세매출액이 EUR5,580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 동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등록번호(VAT identification number)가 부여되지 않음

나. 등록 및 납부의무 면제

- 벨기에에서는 연간 과세매출이 EUR5,580(VAT 제외한 금액)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 또한 동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등록번호(VAT identification number)가 부여되지 않음
 - 다만, 소규모 사업자의 역내 취득금액이 EUR11,200 이상이거나 역내 취득에 대해 벨기에에서 과세되는 것을 선택한 경우 부가가치세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됨
- 소규모 사업자 특례제도를 적용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총매출액이 연간 EUR5,580을 초과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일반 VAT 제도로 적용받게 됨
 - 하지만 일반 VAT 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납세의무자의 연간 총매출액이 EUR5,580 이하로 변경되었을 경우
 - 자동적으로 다음 7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자 특례제도를 적용
 - 이러한 특례제도를 적용받고 싶지 않다면 6월 1일 전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함
- 한편, 아래의 거래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 경제적 활동에 속하는 건물과 자동차의 판매
 - 고정 자산과 관련된 활동
 - 특정한 농업종사자 제도에 속하는 농업종사자의 거래

- 공동 어패류 시장에서 공공거래에 의한 담배, 어패류 등을 위한 특정한 거래
- 벨기에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VAT 납세자의 거래

□ 소규모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일반 VAT 제도를 적용받는 것은 가능함. 다만, 일반 VAT 제도를 선택한 후에는 최소 2년간 변경할 수 없음

다. 단일세율제도(Flat-rate scheme)

□ 벨기에에는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제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액 계산의 편의를 위해 공급대가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Flat rate scheme, 이하 ‘단일세율제도’)를 두고 있음

- 단일세율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VAT 납세자는 개인, 파트너십 또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이어야 함
 - VAT 납세자는 VAT 목적상 발행된 송장(invoice)이 없는 거래가 최소한 총매출액의 75% 이상이어야 함
 - VAT 납세자는 VAT를 제외하고 연간 총매출액이 EUR750,000 이하여야 함

□ 단일세율제도는 세 가지 종류가 있음

- 사업장에서 모든 VAT 납세자에 의해 사용되는 일반적인 단일세율
- 사업장 내 특정 범주(specific categories)에서 사용되는 특별 단일세율
- 개인 단일세율

□ 단일세율제도를 적용받는 VAT 납세자는 일반 VAT 제도를 선택할 수 있음

- 요건은 3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그러면 4월 1일부터 최소 2년 동안 효력이 있음

16. 덴마크

가. 부가가치세 현황

- 부가가치세율은 영세율을 포함해 세 가지 종류가 있음
 - 대부분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25%의 표준세율이 적용됨
 - 일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20%의 경감세율을 적용함
 - 20%의 경감세율은 EU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예술품, 수집물품, 골동품 등에 적용함
 - 영세율은 수출물품, 선박과 비행기 내에서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신문에 적용함
- 덴마크에서는 과세매출액이 일정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다음과 같은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 연간 총매출액이 DKK50,000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등록 및 납부의무 면제

나. 등록 및 납부의무 면제

- 덴마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음
 - 이전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었던 사업자
 - 따라서 신규사업자인 경우 등록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연간 총매출액이 DKK50,000(약 EUR6,700) 미만
-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VAT act) 47조에 따라 사업 개시 8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 확인서를 발급 받음

17. 이탈리아

가. 부가가치세 현황

- 부가가치세율은 영세율을 포함해 세 가지 종류가 있음
 - 대부분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20%의 표준세율을 적용함
 - 10%의 경감세율은 가축, 생선, 천연 벌꿀, 와인생산용 포도 등에 적용함
 - 4%의 경감세율은 유제품, 과일, 야채, 곡류, 비료 등에 적용함

- 이탈리아에서는 과세공급가액이 일정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다음과 같은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 방문판매(door-to-door)나 자동판매기를 이용하는 특정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
 - 소액납세자 및 특정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분기별 납부가 가능함
 - 소액납세자는 간이매출세액기록부(Simplified Output Tax Record)를 이용하여 작성이 가능함

나. 등록 및 납부의무 면제

- 이탈리아에서는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등록의무 및 납세의무 면제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음
 -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탈리아 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으로 인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다. 소규모 사업자의 기타 특례제도

- 부가가치세율은 표준세율(20%), 정상세율(10%) 및 최저세율(4%)이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소규모 사업자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세율은 없음

- 소규모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적용될 세율은 표준세율이며, 정상세율 및 최저세율은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세율로 소규모 사업자 여부와는 상관없음
- 다만, 방문판매(door-to-door)를 수행하거나 자동판매기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특정한 형태의 소규모 사업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률(3.85~16.65%)을 곱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함

□ 분기납부제도(Quarterly Paying Tax)

- 과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매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D.P.R. 100/98)
- 단, 소액납세자(Minor Taxpayer)는 기준금액에 따라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음
 -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 연간 용역의 공급가액이 EUR309,874.13 이하
 -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 연간 과세공급가액이 EUR516,456.90(Art. D.P.R. 542/99) 이하인 사업자
 - 재화와 용역을 모두 공급하는 사업자는 서비스의 기준금액에 따름

□ 간이매출세액기록부(Simplified Output Tax Record)

- 과세사업자는 납부세액의 계산을 위하여 매출·매입세액기록부를 기록하고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함
- 다만, 소액납세자는 간이매출세액기록부(Simplified Output Tax Record)의 작성이 허용됨

18. 스페인⁷⁰⁾

가. 부가가치세 현황

- 스페인의 부가가치세율은 16%의 표준세율과, 영세율, 4% 특별경감세율, 7% 경감세율이 있음
 - 대부분의 재화 및 용역의 역내취득(intra-Community acquisitions)과 수입에 대해서 16%의 표준세율 적용
 - 담배, 술을 제외한 식음료품 등은 7%의 경감세율 적용
 - 책, 잡지, 약품 등은 4%의 특별경감세율 적용

- 스페인에서는 과세매출액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상 다음과 같은 특례제도를 두고 있음
 - 연간 총매출액이 EUR450,000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계산식을 통해 도출된 최소한의 VAT 납부금액(minimum payment of VAT)을 납부
 - 단, 납세의무자는 개인 및 파트너십 등 법적 실체가 없는 사업자에 한정

나. 소규모 사업자의 최소납부세액계산방식(minimum payment of VAT)

- 부가가치세 특례제도를 적용받는 소규모 사업자 요건은 다음과 같음
 - 납세의무자는 법적 실체가 없는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 납세의무자는 시행령 37조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
 - 철강, 유리, 플라스틱 등의 제조업자
 - 올리브유, 치즈, 통조림, 신발 등의 판매자 등
 - 납세의무자는 개인소득세 목적상 추계과세제도(special indirect system)를 적용받아야 함
 - 동 시스템하에서 과세표준은 세율, 지표 등의 여러 요소를 통해 결정됨

70) www.ibfd.org

- 연간 과세매출액이 EUR450,000(농업, 임업 및 어업활동의 경우 EUR300,000) 이하
- 직전연도 역내 취득 및 수입이 EUR300,000(VAT 제외) 이하

□ 위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소규모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일반 VAT 제도를 선택할 수 있음

- 소규모 사업자가 일반적인 VAT 제도를 선택하였다면 최소 3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소규모 사업자 특례제도를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는 최소한의 VAT 납세금액(minimum payment of VAT)을 납부하여야 함

○ 최소한의 VAT 납세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함 :

+ 일반거래(ordinary transactions) 부가가치세 매출세액(1)
- 일반거래(ordinary transactions) 부가가치세 매입세액(2)
특례제도에 의한 부담액
+ 기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3)
- 고정자산과 무형자산의 구입으로 발생된 VAT
최소한의 VAT의 납세금액

: (1)

- 실제 수입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활동을 위한 고정 조세부담액의 합계액에 의해 계산
 - 사업활동에 속하는 총인원의 수, 사업자산의 규모, 자동차의 수, 의자의 수, 방의 수 등의 각 요소를 포함하여 도출한 금액

: (2)

- 사업활동과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의 취득 및 수입과 관련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고정자산과 관련된 VAT는 제외. 특정한 장소 등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위한 여행비용은 공제하지 않음
- 매입세액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VAT 신고액에 포함되는 VAT 수입액의 1%를 공제하는 것도 가능

: (3)

- (1)에 포함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세액
 - 역내 재화획득
 - 매수인 지불이 적용되는 비거주자 기업의 과세공급

□ 특례제도하의 기업들은 사업활동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의 매입 송장을 보관해야 되고, 고정자산의 구입은 별도로 기입해야 됨

다. 분기납부제도

- 과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매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 단, 소규모 사업자(small entrepreneurs)는 기준금액에 따라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음
 - 즉, 직전연도 연매출이 EUR6,010,120를 초과하면 1년에 열세 번(예정신고 열두 번, 확정신고 한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 그 이하이면 1년에 다섯 번(예정신고 네 번, 확정신고 한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됨
 - 각 연도의 4월, 7월, 10월의 2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는 위의 소규모 사업자 특별계산방식에 의해 결정된 세액을 예납해야 함

19. 네덜란드⁷¹⁾

가. 부가가치세 현황

- 네덜란드의 부가가치세율은 영세율을 포함하여 3개의 부가가치세율이 있으며(부가가치세법 9조), 농업부문에 적용되는 특별 단일세율이 있음(부가가치세법 27조)
 - 19%의 표준세율은 다른 세율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에

71) www.ibfd.org

대하여 적용

- 6%의 경감세율은 과일, 야채, 곡류 등의 식표품, 수돗물, 책, 난방용 가스, 석유 등의 재화와 일부 서비스업의 경우에 적용
- 영세율은 일반적으로 역내취득(intra-Community) 재화의 공급, 수출용 재화 및 이와 연관된 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적용
 -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장부 및 각종 자료를 통해 자격요건을 입증해야 함
 - 예) 선하증권(bills of landing), 해외지급서(payment from abroad), 관세서류(customs document), 고객의 부가가치세 등록번호(VAT identification number)
- 농업, 임업, 원예, 어업, 낙농업 종사자에 대한 특별 단일세율은 일부 농산물의 판매에 대하여 5.1%의 세율적용

나. 등록 및 납부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법 25조(Art. 25 VAT Act)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small enterprise)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허용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음
 - 과세가능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연간 부가가치세 총납부세액이 EUR1,883를 초과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또는 파트너십에 해당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총납부세액(=output VAT-input VAT)이 EUR1,88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특별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음
 - 특별세액공제 = $2.5 \times (\text{EUR } 1,883 - \text{납부세액})$
 -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EUR1,345인 경우 특별세액공제는 EUR1,345(= $2.5 \times (\text{EUR } 1,883 - \text{EUR } 1,345)$)로 실제 납부액은 없음
 - 납부세액이 EUR1,345 이하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
-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등록의무, 기장의무,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의무가 없음
 - 소기업은 부가가치세가 없는 납세고지서를 받게 되며, 매입부가가치세(input VAT)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이러한 특별 조항은 개인사업자(private person)에게만 적용되며 법인(legal person)에는 적용되지 않음
 - 특별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농업인, 부동산 임대업 등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다. 현금주의회계제도(cash receipts basis)

- 현금주의회계제도는 발생시점이 아니라 현금의 수취·지급시점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회계방식을 말함
 -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하며,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공급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음
- 현금주의회계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음(Art. 26 VAT Order)
 - 특정 소매상인(shopkeepers, market vendors, shoemakers, hairdressers, upholsterers) 등
 - 부가가치세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총매출의 80% 이상을 공급하는 사업자
 - 과세당국으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은 사업자

20. 룩셈부르크⁷²⁾

가. 부가가치세 현황

- 룩셈부르크의 부가가치세율은 영세율을 포함하여 5개의 부가가치세율이 있으며, 농업부문에 적용되는 특별 단일세율이 있음
 - 15%의 표준세율은 다른 세율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에

72) www.ibfd.org

대하여 적용

- 3%의 최저경감세율은 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식료품, 동물사료, 책, 신문 등에 적용
- 6%의 경감세율은 원예식물, 이미용, 수선업 등에 적용
- 12%의 중간세율은 와인, 인쇄업 등에 적용
- 농업인 단일세율(Flat rate for farmers)은 4% 또는 8%로 농업 및 임업 사업에 적용

나. 납부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법 57조(Art. 57(1) CTVA)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small enterprise)에게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직전 12개월간 공급대가(turnover)가 EUR10,000를 초과하지 않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됨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특례제도를 적용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준금액이 EUR10,0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할 수 없음
 - 또한 서면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제도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로 과세된 이후에는 최소 5년간 변경할 수 없음

다. 부가가치세 경감제도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직전 12개월간 공급대가(turnover)가 EUR25,000를 초과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특례제도를 적용받지 않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해줌(Art. 57(2) CTVA)
 - EUR25,000와 직전 12개월간 공급대가의 1%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공제
 - 매입세액공제 이후의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한도는 EUR150임
- 다음에 열거되는 부가가치세 거래대상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제외함
 - 수입
 - EU 역내취득(Intra-community acquisitions)

- 룩셈부르크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사업자로부터의 공급

라. 분납 신고납부제도

- 사업자는 통상 매달 신고하며,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다음 달 1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 그러나 간편납세(simplification)를 위해 사업자의 연간 공급가액이 EUR620,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음
 - 공급대가가 EUR112,000 이하일 경우: 연차신고가 가능하며 과세기간 종료 이후 다음 해의 3월 1일 이전에 1회 납부하여야 함
 - 공급대가가 EUR112,000~EUR620,000일 경우: 분기별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1월 15일, 4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까지 매분기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과세관청은 분기, 연차 신고납부 납세자에게 월별신고납부의 선택가능 여부, 신고납부 주기에 변화가 있을 시 고지하여야 함

21. 노르웨이⁷³⁾

가. 부가가치세 현황

- 노르웨이의 부가가치세율은 다음과 같음
 - 25%의 표준세율은 다른 세율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적용
 - 14%의 경감세율에 적용하는 것은 대부분 식료품의 공급에 해당됨
 - 8%의 특별경감세율은 여객운송, 숙박업, 공용방송서비스, 영화관입장료 등에 적용함
 - 농어민이 직접 판매 또는 조합을 통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판매는 특별히 11.11%

73) www.ibfd.org

를 부과함

- 부가가치세 등록의무는 공급대가가 NOK50,000 이상일 경우 발생함
 - 매출액과 상관없이 직접 기업청(firms ministry)에 자발적으로 등록신청할 권한을 받을 수 있음

나. 연차회계제도

- 노르웨이에서 GST를 계산하고 신고·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2개월별, 분기별, 연 1회가 있음

1) 2개월별 신고 및 납부

- 노르웨이의 신고납부기간은 통상 2개월마다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
 - 그러나, 공제세액이 매출에 대한 납부세액을 25% 초과할 경우 과세당국은 신고주기를 1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음
 - 공제세액이 매출에 대한 납부세액을 50% 초과할 경우 과세당국은 최소 1주일까지 신고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

- 사업자는 신고기간 종료일 이후 다음 달의 10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함

2) 분기별 신고 및 납부

- 수신자 부담의 해외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on services purchased abroad under the reverse charge)는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음

3) 연 1회 신고 및 납부

- 소규모 사업자(minor enterprises)는 과세가능한 공급가액이 NOK1,000,00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연 1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함

22. 폴란드⁷⁴⁾

가. 부가가치세 현황

- 노르웨이의 부가가치세율 4가지와 농업부분에 적용하는 특별경감세율이 있음
 - 22%의 표준세율은 다른 세율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적용
 - 7%의 경감세율에 적용하는 것은 대부분은 곡류, 과일, 야채 등 식료품의 공급에 해당
 - 5%의 경감세율은 농민에게 적용
 - 3%의 경감세율은 택시운수업에 적용
 - 역내취득(intra-Community acquisition)에 의한 화학물질, 곤충을 농업에 사용하는 공급은 3%를 적용
 - 영세율은 재화의 수출, 자유무역지역 내 재화의 공급, 국제운송 등에 적용

나. 등록 및 납부면제

- 소규모 사업자란 직전 12개월간 매출액(turnover)이 EUR10,000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로 규정함
 - 소규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등록 및 납부의무 면제

74) www.ibfd.org

다. 분기납부제도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매월이며, 납부는 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다음 달의 25일 이내에 과세당국에 납부하여야 함
 - 폴란드에는 연차회계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소규모 사업자와 농민은 분기별로 VAT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수 있음

23. 포르투갈⁷⁵⁾

가. 부가가치세 현황

- 포르투갈의 부가가치세율은 3가지가 있음
 - 20%의 표준세율은 본토에서 다른 세율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적용
 - 포르투갈의 자치구(autonomous region) 표준세율은 14%임
 - 5%의 경감세율에 적용하는 것은 대부분 곡류, 과일, 야채 등 식료품, 신문, 잡지, 전력, 천연가스 등의 공급에 해당
 - 포르투갈의 자치구는 4% 적용
 - 12%의 경감세율은 통조림, 패스트푸드 등의 공급에 적용
 - 포르투갈의 자치구는 8% 적용

나. 납부의무면제

-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이지만 등록은 반드시 필요함
 - 소득세법상 표준부기제도(standard bookkeeping system)를 사용하지 않는 자

75) www.ibfd.org

- 수입, 수출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연간 과세 공급가액이 EUR10,000을 초과하지 않는 자

다. 간편납세제도(simplified regime)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소매상인(small retailer)이 간편납세 대상자임
 - 수출, 수입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연간 과세 공급대가가 EUR50,000을 초과하지 않는 자
 - 판매를 위한 재화의 구입금액이 사업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90% 이상이어야 함
- 간편납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
 - 최종판매제품의 매입세액 × 25% + 투자재(investment goods)매입세액 × 25% - 투자재의 매입세액
- 납부의무면제 특례제도와 간편납세는 중복적용할 수 없음

라. 분기납부제도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매월이며, 납부는 신고기간 매월 말일에 과세당국에 납부하여야 함
 - 연간 과세 공급가액이 EUR650,000를 초과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매월 신고납부하여야 함
 - 연간 과세 공급가액이 EUR650,000 이하일 경우 분기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
 - 연간 과세 공급가액이 EUR650,000 이하인 사업자가 월별 신고납부를 선택했을 경우, 다시 분기별 신고납부를 적용받으려면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지나야 함
 - 월별, 분기별 모두 전자신고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다음의 날 중에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함

- 월별신고자: 각 과세기간 종료일의 2번째 달의 10일까지
- 분기별신고자: 각 과세기간 종료일의 2번째 달의 15일까지

24. 슬로바키아⁷⁶⁾

가. 부가가치세 현황

- 슬로바키아의 부가가치세율은 영세율을 포함해서 3가지가 있음
 - 19%의 표준세율은 다른 세율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적용
 - 10%의 경감세율에 적용하는 것은 의약품, 의료기기, 책 등의 공급에 해당
 - 영세율은 역내취득(intra-Community supply) 재화, 수출품, 국외제공용역, 외국항행용역 등에 적용

나. 등록 및 납부의무 면제

-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소규모 사업자(Small business)의 경우 부가가치세 등록 및 납부의무가 면제임
 - 연간 과세 매출액(turnover)이 EUR49,790을 초과하지 않는 자

다. 분기납부제도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매월이며, 납부는 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안에 과세당국에 납부하여야 함
 - 연간 과세 공급가액이 EUR331,939.19를 초과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매월 신고납부하여야 함

76) www.ibfd.org

- 연간 과세 공급가액이 EUR331,939.19 이하일 경우 분기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

25. 스웨덴⁷⁷⁾

가. 부가가치세 현황

- 스웨덴의 부가가치세율은 영세율을 포함해서 4가지가 있음
 - 25%의 표준세율은 다른 세율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적용
 - 12%의 경감세율에 적용하는 것은 숙박업, 캠핑업, 예술품 판매, 담배, 와인 등의 공급에 해당
 - 6%의 경감세율에 적용하는 것은 대부분 책, 잡지, 신문, 영화관입장 등의 공급에 해당
 - 영세율은 역내취득(intra-Community supply) 재화, 수출품, 특정한 국제거래 등에 적용

나. 연차회계제도

- 연간 과세 공급가액이 SEK1백만을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는 소득세신고서(income tax return)에 부가가치세 관련사항을 기장(bookkeeping)하여 신고하여야 함
 - 즉, 부가가치세를 1년에 한 번만 신고납부하면 됨
 -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소득세신고로 1년에 한 번으로도 가능하고, 매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로도 신고가 가능함
- 스웨덴의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에 의해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짐
 - [방식 1] 부가가치세와 고용주부담금, 원천징수세금, 세 가지를 동시에 신고하는

77) www.ibfd.org

방식

○ [방식 2] 소득세를 신고하는 때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는 방식

□ 연간 과세대상 매출의 크기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방식 및 횟수가 다름

○ 과세대상 연매출이 SEK1백만 이하이면 [방식 2]에 의해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뤄지는바, 1년에 한 번 신고하면 됨

- 다만, 과세대상 연매출이 SEK1백만 이하라고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식 1]에 의해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함

- 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없는 자(예를 들어 상업 파트너십, 유한 파트너십, 파산재단, 외국기업 및 공공기관)
- 특별한 사유로 사업장의 임대를 위해 등록되어 있는 자
- 설립 단계에 있기 때문에 환급 자격을 갖는 자

○ 과세대상 연매출이 SEK1백만 초과 SEK40백만 이하이면 [방식 1]에 의해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함

- 다만,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매월 신고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세관청에서 지정하는 경우에는 매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함

○ 과세대상 연매출이 SEK40백만을 초과하면 [방식 1]에 의해 매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함

〈표 Ⅲ-43〉 스웨덴의 부가세 신고횟수

연간 과세대상 매출	신고방식	연간 신고횟수
~ SEK1백만	소득세를 신고하는 때 부가세를 함께 신고	1회
SEK1백만 ~ SEK40백만	부가세와 고용주부담금, 원천징수세금 등 세가지 세금을 동시신고	4회
SEK40백만~		12회

□ 기업의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횟수가 다르게 적용됨

○ 일반적인 경우 과세대상 연매출이 SEK40백만을 초과하면 매월 부가가치세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6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SEK1백만 초과 SEK40백만 이하이면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42일 이내에 신고납부함
- SEK1백만 이하이면 1년에 한 번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42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음

26. 스위스⁷⁸⁾

가. 부가가치세 현황

- 스위스의 부가가치세율은 3가지가 있음
 - 7.6%의 표준세율은 다른 세율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적용
 - 3.6%의 경감세율에 적용하는 것은 숙박업(아침식사 포함), 숙박업의 부수용역 등의 공급에 해당
 - 2.4%의 경감세율은 식료품, 수도, 동물사료, 신문, 잡지, 책 등의 공급에 적용

나. 간편납세제도(simplified regime)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납세제도 대상자임
 - 연간 과세 공급대가(VAT 제외한 금액)가 CHF3,000,000을 초과하지 않는 자
 - 1년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CHF60,000을 초과하지 않는 자
- 간편납세제도를 선택한 소규모 사업자는 공급자에게는 7.6%, 3.6% 또는 2.4%의 세율을 적용함
 - 그러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는 업종별 부가가치율(0.6~6.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당국에 납부함

78) www.ibfd.org

- 예를 들어, 연간 과세 공급대가가 CHF400,000인 변호사가 간편납세 방법을 선택했을 경우(변호사의 부가가치율은 6%임)

- 고객에게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text{CHF}400,000 \times 7.6\% = 30,400$ VAT
- 납부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text{CHF}430,400 \times 6\% = \text{CHF}25,824$ VAT

□ 간편납세제도는 적어도 5년간 적용하여야 하며, 비거주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다. 연차회계제도(Semi-annual VAT returns)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통상 매분기이며, 납부는 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안에 과세당국에 납부하여야 함

- 정기적으로 환급세액(negative VAT returns)이 CHF20,000 이상 발생하는 수출업자와 같이 특별한 경우와 과세당국이 지정하는 사업자는 매월 신고납부하여야 함

□ 그러나, 간편납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한 번만 신고납부할 수 있음

27. 터키⁷⁹⁾

가. 부가가치세 현황

□ 터키의 부가가치세율은 영세율을 포함하여 4가지가 있음

- 10%의 표준세율은 다른 세율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적용
- 8%의 경감세율에 적용하는 것은 식료품, 의약품, 의료기기, 농기구 및 장비, 출판업 등의 공급에 해당

79) www.ibfd.org

- 1%의 경감세율은 농업, 신문, 중고차 등과 관련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적용
- 영세율은 수출재화, 외국항행용역 등에 적용

나. 납부의무면제

- 개인소득세법 9조와 66조에 따라 소득세 면제대상인 소규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대상임
 - 관광소매업, 수선업, 미용업, 세탁업, 운수업 등의 종사자인 소규모 사업자는 조세 절차법에 따라 기장의 의무는 없음
 - 그러나 구매 및 사업비용 등 관련서류는 보관해야 할 필요가 있음

IV. 결론: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VAT 과세특례제도 운용현황

- 각국은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과세특례제도를 운영중에 있음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VAT 과세특례제도로는 크게 등록·납부의무면제, 간편납세제도, 신고납부 횟수의 축소, 현금주의 과세제도 등이 있음
 - OECD 회원국 중 부가가치세를 운영중인 28개 국가 가운데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등록·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국가는 22개국, 간편납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9개국, 신고납부 횟수를 줄여 주고 있는 국가는 18개국, 현금주의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6개국임
 - 우리나라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제도를 통해 납부의무 면제 및 간편납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표 IV-1〉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VAT 과세특례제도 국제비교

국가	등록·납부 의무면제	간편납세	신고납부 횟수축소	현금주의 과세제도	기타
우리나라	△ ¹⁾	○			
호주	○		○	○	
오스트리아	○			○	
벨기에	○	○			
캐나다	○	○	○		
체코	○				
덴마크	○				
핀란드					○ (세액공제) ⁴⁾
프랑스	○		○		
독일	○	○		○	
그리스	△ ²⁾		○		
헝가리	○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 ³⁾		
이탈리아			○		
일본	○	○			
룩셈부르크	△ ⁵⁾		○		○ ⁶⁾
네덜란드	○			○	
뉴질랜드	○		○	○	
노르웨이	△ ⁷⁾		○		
폴란드	○		○		
포르투갈	△ ⁸⁾	△	○		
슬로바키아	○		○		
스페인		△ ⁹⁾	○		
스웨덴			○		
스위스		○	○		
터키	○				
영국	○	○	○	○	

- 주: 1)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를 면제함
 2) 소비재 및 신규 교통수단의 역내취득에 한해 적용되는 제한적인 규정
 3) 연차신고제도가 존재하나, 그 기준이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않고 있어 소규모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제도인지 다소 불명확함
 4) 당해 회계연도의 매출액이 EUR8,500 이하인 과세자는 그 회계연도 동안 납부한 VAT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음
 5) 공급대가가 EUR10,000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됨
 6) 공급대가가 EUR25,000을 초과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자는 납부세액을 경감해줌
 7) 공급대가가 NOK50,000 미만의 경우 등록의무가 없음
 8) 공급대가가 EUR50,000을 초과하지 않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이지만, 등록은 반드시 하여야 함
 9) 일반적인 간이과세제도하에서는 매입세액만을 추계하나, 스페인의 경우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모두 추계함

나. 등록·납부의무 면제

- 등록·납부의무 면제란 과세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에서 면제하는 것을 말함
 - 기준금액에는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하는바, 하나는 사업자등록과 VAT 납부의무를 모두 면제하는 “등록·납부의무면제기준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자등록은 강제되나 납부의무는 면제되는 “납부의무면제기준금액”임
 - 우리나라와 프랑스, 헝가리, 포르투갈은 과세공급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이면 VAT 납부의무는 면제하되, 사업자등록은 강제함
 - 그러나 그 밖의 국가들은 신고납부의무와 사업자등록의무를 모두 면제함

- 등록 또는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은 국가별로 상당히 상이함
 - 우리나라보다 낮은 기준금액을 갖고 있는 국가는 벨기에, 덴마크 등 4개 국가에 불과한 바, 우리나라의 기준금액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속함

- 일부 국가는 사업자의 성격이나 공급대상의 특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이원화하고 있음
 - 호주와 캐나다는 비영리단체에 대해 일반법인과 다른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재화와 용역에 적용되는 매출액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납세자로 하여금 등록·납부면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다만, 잦은 변경으로 인해 세무행정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번 선택하면 일정기간 동안은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재적용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가 많음

〈표 IV-2〉 VAT/GST 등록/납부면제 기준금액 국제비교

국가	화폐단위	면제대상		등록/납부면제 기준금액				취소 기준금액	포기 가능 여부	최저 등록 기간
		등록	신고 납부	기준 금액	자국 통화	원화금액 (백만원)	변동 주기			
우리나라	KRW	×	○	공급대가	24백만 ¹⁾	24	부정기적	n.a.	-	-
호주	AUD	○	○	과세 공급가액	75,000 (비영리 150,000)	78 (비영리 155)	...	n.a.	○	1년
오스트리아	EUR	○	○	연매출 (면세공급가액 포함)	30,000	48	...	34,500	○	5년
벨기에	EUR	○	○	과세 공급가액	5,580	9	...	n.a.	○	2년
캐나다	CAD	○	○	직접 4분기 과세공급가액	30,000 (비영리 50,000)	33 (비영리 54)	...	n.a.	○	1년
체코	CZR	○	○	연간 과세공급가액	1,000,000	62	...	n.a.	○	1년
덴마크	DKK	○	○	연간 총매출	50,000	11	...	n.a.
프랑스	EUR	X	○	당년도 과세공급가액	재화 80,000, 용역 32,000	재화 128, 용역 51	...	재화 88,000, 용역 34,000	○	2년
독일	EUR	○	○	전년도 공급대가	17,500	28	...	n.a.	○	5년
				당년도 공급대가	50,000	80				
그리스	EUR	○	○	당년도 과세공급가액	100,000	160	...	n.a.	○	5년
헝가리	HUF	×	○	전년도 과세공급가액	5,000,000	30	부정기적 (인상)	n.a.	○	2년
아일랜드	EUR	○	○	연간 과세공급가액	재화 55,000 용역 27,500	재화 88, 용역 44	부정기적	n.a.	○	-
일본	JPY	n.a. ²⁾	○	점점년 과세공급가액	1천만	124	부정기적 (인하)	n.a.	○	2년
룩셈부르크	EUR	...	○	연간 과세공급가액	10,000	15	...	n.a.	○	5년
네덜란드 ³⁾	EUR	○	○	납부세액	1,345	2	...	n.a.	×	-
뉴질랜드	NZD	○	○	전년도 또는 당년도 과세공급가액	60,000	49	부정기적 (인상)	n.a.	○	-
노르웨이	EUR	...	○	전년도 공급대가	10,000	15	...	10,000	...	5년
폴란드	EUR	○	○	연간 과세공급가액	10,000	15	...	n.a.
포르투갈	EUR	×	○	연간 과세공급가액	10,000	15	...	n.a.
슬로바키아	EUR	○	○	연간 총매출	49,790	75	...	n.a. ⁵⁾	... ⁶⁾	...
터키	LIRA	...	○
영국	GBP	○	○	전년도 과세공급가액	68,000	126	매년 인상 ⁴⁾	66,000	○	-

주: 1) 우리나라는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납부의무를 면제하나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위해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비교하였음
 2) 일본에는 사업자등록제도 자체가 없음
 3) 네덜란드의 경우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이 EUR1,34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2.5×(1,883 - 납부세액)]을 공제함
 4) 매년 물가변동을 고려하여 조정이 이루어짐
 5) n.a.는 적용불가를 의미함
 6) ...은 자료 미비로 확인불가를 의미함(이하, ...은 자료 미비로 확인불가를 의미함)

다. 간편납세제도

1) 간편납세제도 적용국가

- OECD국가 중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납세자의 세액 계산을 간편하게 하는 간편납세제도를 운영중인 국가로는 독일, 일본, 영국, 캐나다 등을 포함해 모두 8개 국가가 있음
 - 간편납세제도하에서는 VAT 환급이 불가능한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아 통상적으로 VAT 환급이 발생하는 사업자는 오히려 간편납세제도의 적용으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간편납세제도의 적용 여부를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맡기되, 재적용 제한규정을 통해 빈번한 변경으로 인한 세무행정상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음

〈표 IV-3〉 간편납세제도 적용국가

국가	관련 제도	포기가능	재적용 제한
우리나라	간이과세제도	○	3년
벨기에	단일세율제도(flat rate scheme)	○	2년
캐나다	간편계산제도(Quick Method of Accounting)	○	1년
독일	표준율제도(Durchschnittssatze)	○	5년
일본	간이과세제도	○	2년
포르투갈	간편납세제도(simplified regime)	…	…
스페인	VAT 최소납부세액(minimum payment of VAT)	○	3년
스위스	간편납세제도(simplified regime)	…	5년
영국	단일세율제도(flat rate scheme)	○	1년

2) 적용요건

- 모든 국가가 간편납세제도의 적용요건으로 매출액 기준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와 캐나다, 스페인은 업종요건을 두고 있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업종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 독일은 간편납세에 따른 세액과 통상적인 VAT 과세제도에 따른 세액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두고 있으며, 영국은 전년도에 부가가치세법 위반 또는 VAT 탈세로 인해 처벌(penalty)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음
 - 독일과 스페인은 소득세 과세방법이나 기장의무와 관련지어 간편납세제도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표 IV-4〉 간편납세제도 적용요건

국가	적용요건
우리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하일 것 • 업종요건 및 간이과세 배제기준 통과 필요
벨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파트너십 또는 유한책임회사 • 세금계산서가 없는 거래가 총매출의 75% 이상일 것 • 과세공급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일 것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하일 것 • 1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 업종요건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매를 위해 재화를 구입하는 사업자¹⁾: 골동품상, 식료품 및 편의점, 아트숍, 부티크, 가스 충전소) 또는 -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매출액이 기준금액 이하일 것 • 기장의무 또는 정기결산의무가 없을 것 • 간이과세에 따른 세액과 통상적인 VAT 과세제도에 따른 세액 간에 상당한 차이가 없을 것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전년의 과세 공급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일 것
포르투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수입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연간 과세 공급가액이 EUR50,000을 초과하지 않는 자 • 판매를 위한 재화의 구입금액이 사업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90% 이상인 경우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이외의 사업자 • 업종요건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유리·플라스틱 등의 제조업자 - 올리브유·치즈·통조림·신발 등의 판매업자 • 소득세 과세목적상 추계과세제도(special indirect system) 적용 • 연간 과세 공급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일 것
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과세 공급가액이 CHF3,000,000을 초과하지 않는 자 • 1년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CHF60,000을 초과하지 않는 자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년도 과세 공급가액(VAT 제외) 및 사업수입금액(면세공급 및 VAT 포함)이 기준금액 이하일 것 • 전년도에 부가가치세법 위반이나 탈세로 인해 처벌(penalty)받은 사실이 없을 것 • VAT group의 일원이 아닐 것 • 타사업체와 독립적일 것

주: 1) 재판매를 위한 재화의 구입가액이 1역년의 공급대가의 40% 이상이어야 함

□ 영국은 기준금액으로 과세 공급가액과 사업수입 금액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과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함

○ 우리나라의 기준금액은 4,800만원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 일본의 경우 기준금액이 6억원을 초과⁸⁰⁾하며, 비교대상국가 중 가장 낮은 기준금액을 갖고 있는 독일 역시 우리나라의 2배 정도 수준임

80) 부가가치세 도입에 따른 납세자의 불만을 완화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기준금액을 높게 설정한 측면이 있음

〈표 IV-5〉 간편납세제도 기준금액

국가	화폐 단위	적용기준금액			취소기준금액			변동주기
		기준금액	자국 통화	원화환산 (백만원)	기준 금액	자국 통화	원화환산 (백만원)	
우리나라	KRW	전년도 공급대가	48,000,000	48	n.a.	n.a.	n.a.	부정기적
벨기에	EUR	과세공급가액	750,000	1,200	n.a.	n.a.	n.a.	...
캐나다	CAD	연간 공급대가	200,000	217	n.a.	n.a.	n.a.	...
독일	EUR	전년도 매출액	61,356	98	n.a.	n.a.	n.a.	...
일본	JPY	전전년의 과세공급가액	5천만	621	n.a.	n.a.	n.a.	부정기적 (인하)
포르투갈	EUR	연간 과세공급가액	50,000	75	n.a.	n.a.	n.a.	...
스페인	EUR	연간 과세공급가액	450,000	721	n.a.	n.a.	n.a.	...
스위스	CHF	연간 공급대가	3,000,000	3,169	n.a.	n.a.	n.a.	...
영국	GBP	차년도 과세공급가액 ¹⁾	150,000	277	전년도 공급대가	225,000	416	부정기적, 인상
		차년도 사업수입금액 ¹⁾	187,500	346				

주: 1) 추정금액이 실제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추정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penalty를 피할 수 있음

3) 세액계산구조

□ 간편납세제도의 세액계산구조는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유형 1] 우리나라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후, 여기에 일반적인 VAT 세율을 곱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며, 스위스는 공급대가에 일반적인 VAT를 곱한 금액을 공급대가에 더한 금액에 다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후 납부세액을 계산함
- [유형 2] 벨기에와 캐나다, 영국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단일세율⁸¹⁾을 곱해 납부세

81) 캐나다와 영국은 업종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상이함.

액을 계산함

- [유형 3] 독일, 일본의 경우 매출세액은 일반적인 VAT 과세제도와 동일하게 계산하
되 매입세액은 매출액 또는 매출세액에 국세청이 정한 비율을 곱해 계산함
- [유형 4] 스페인은 실제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추계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을 이용해
납부세액을 계산함

□ 일반적으로 간편납세제도하에서는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음

- 그러나 영국은 고가의 자본재 구입에 대해 추가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캐나다 역시 모든 간이사업자를 대상으로 약 32만원 상당의 추가적인 공제를 허용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제도를 통한 매출누락을 막기 위하여 납세자가 매
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경우 세
금계산서 등의 수취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표 IV-6〉 간편납세제도 계산산식

국가	계산산식	특이사항
우리나라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일반적인 VAT세율	원칙적으로 불가. 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부가가치율'을 공제받을 수 있음.
벨기에	공급대가×단일세율	
캐나다	공급대가×업종별·지역별 단일세율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 불가. 단, 예외적으로 CAD300(한화 약 32만원)의 매입세액공제 허용.
독일	매출세액(매출액×일반적인 VAT세율) -매입세액(매출액×표준율)	
일본	매출세액-매출세액×간주매입률	
포르투갈	최종판매제품의 매입세액×25%+투자재 매입세액×25%-투자재의 매입세액	
스페인	매출세액-매입세액 * 매출세액	실제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추계에 의한 사업수입금액 ¹⁾ 을 이용해 납부세액 계산

국가	계산산식	특이사항
	= (추계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사업외 수입)×일반적인 VAT세율 * 매입세액 = 고정자산 및 무형자산 구입에 대한 실제 매입세액 + 기타의 사업 관련 실제 매입세액(입증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계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1%를 매입세액으로 의제)	
스위스	공급대가 + (공급대가×일반적인 VAT세율) ×업종별 부가가치율	
영국	공급대가 ²⁾ × 업종별 단일세율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 불가. 단, 예외적으로 고가(£2,000 이상)의 자본재의 단일 구입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허용.

주: 1)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총인원, 사업용 자산의 규모, 자동차의 수, 의자 수, 방 수 등의 요소를 고려해 사업수입금액 추계
 2) 공급대가의 계산방식에는 일반적인 VAT 과세제도에 따른 기본적인 계산방식과 현금기준, 소매 기준 세 가지 방식이 존재함

4) 적용세율

□ 국가별로 간편납세제도에 따른 납부세액 계산방식 및 VAT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사실상 어려움

- 영국은 공급대가의 2~13.5%가, 캐나다는 1.8~11%가 간편납세제도에 따른 VAT 납부세액이 되는바, 업종과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공급대가의 2~4%)가 이들 국가보다 세부담이 높은 편은 아님
- 일본의 간주매입률을 우리나라의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환산하면 10~50%에 해당하는바, 우리나라의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비교했을 때 업종 간에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적용세율을 업종별로 차등화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는 업종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있음

○ 업종을 구분하는 수준은 나라마다 상이함

- 우리나라는 전체 업종을 3개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독일은 54개, 일본은 5개, 영국은 55개 업종으로 세분화하고 있음

〈표 IV-7〉 간편납세제도 적용세율 국제비교

국가	간이과세				일반적인 VAT 세율(%)	
	적용대상 및 적용결과	구분 기준	적용세율	변동주기	표준	경감
우리나라	공급대가에 적용되며, 납부세액 산출	업종	사실상 3개 업종별로 2~4%를 적용해 납부세액 결정	부정기적(인상)	10	-
벨기에	공급대가에 적용되며, 납부세액 산출	21	6/12
캐나다	공급대가에 적용되며, 납부세액 산출	업종, 지역	사실상 2개 업종과 4개 지역별로 1.8~11%를 적용해 납부세액 결정 ¹⁾	부정기적(인하) 1.8~11%	GST: 5 HST: 13	-
독일	매출액에 적용되며, 매입세액 공제금액 산출	업종	사실상 54개 업종별로 6.5~17.4%를 적용해 납부세액 결정	...	19	7
일본	매출세액에 적용되며, 매입세액 공제금액 산출	업종	사실상 5개 업종별로 0.5~2.5%를 적용해 납부세액 결정	...	5 ²⁾	-
포르투갈	n.a.	n.a.	n.a.	n.a.	n.a.	
스페인	n.a.	n.a.	n.a.	n.a.	n.a.	
스위스	공급가액에 적용되며, 납부세액 계산	업종	0.6~6%	...	7.6	3.6/2.4
영국	공급대가에 적용되며, 납부세액 계산	업종	55개 업종별로 2~13.5%를 적용해 납부세액 계산 ³⁾	부정기적(인하 → 인하 → 인상) ⁴⁾	17.5	5

주: 1) 업종구분: i)재판매를 위해 재화를 구입하는 사업자, ii)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지역구분: i)고정사업장과 공급장소가 모두 HST 과세지역 내에 있는 경우, ii)고정사업장과 공급장소가 모두 HST 과세지역 밖에 있는 경우, iii)고정사업장은 HST 과세지역 내에 있지만 공급장소는 HST 과세지역 밖에 있는 경우, iv)고정사업장은 HST 과세지역 밖에 있지만 공급장소는 HST 과세지역 내에 있는 경우

※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부가세를 “GST”,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부가세를 “PST”라 하는바, PST와 GST를 통합해 일괄 과세하는 경우 이를 “HST”라 함

- 2) 국제 세율은 4%이나, 국제세의 25%가 지방세로 부과되는바, 지방세까지 감안하면 실질 부담률은 5%임
- 3) 신규로 VAT 등록을 한 자가 등록 즉시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1%의 세율경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 4)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08년 12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됐던 VAT 표준세율이 다시 개정 전 수준으로 복귀됨에 따라 단일세율 역시 이를 반영하여 인상조치가 이루어짐

5) 세무행정

- 일반적인 경우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관한 기록을 모두 보관해야 하나, 간편납세제도하에서는 실제 수입금액과 적용세율만 알면 납부세액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 관련 기록의 보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일반적임⁸²⁾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영국의 경우에는 간편납세자라 하더라도 일반과세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급받는 자는 이를 기초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스페인과 영국은 간편납세자의 특성을 고려해 신고·납부횟수 역시 일반과세자에 비해 장기로 설정하고 있음(즉, 신고·납부횟수가 줄어듦)

〈표 IV-8〉 간편납세제도하의 세무행정

국가	기록보관의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신고·납부주기
벨기에
캐나다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와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세율에 관한 기록만 6년간 보존하면 됨
독일
일본	매입과 관계되는 장부, 청구서 등의 보관의무 없음	없음 ²⁾	일반적인 신고·납부주기 적용
포르투갈	분기납부 가능
스페인	분기납부 가능
스위스	연차신고 가능
영국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와 해당 업종의 단일세율에 관한 기록, 자신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만 6년간 보존하면 됨	VAT 등록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¹⁾	연차신고 가능

주: 1) 공급받는 자는 간이사업자가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일본에는 세금계산서제도 자체가 없는바, 간이과세자뿐만 아니라 일반과세자 역시 세금계산서와 관계되는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82) 우리나라의 경우 간이과세자라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간이과세자는 매입관련 기록을 보관할 유인이 있음

라. 신고횟수 축소

- OECD의 많은 국가들이 소규모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신고횟수를 줄여주고 있음
 - 신고횟수 축소를 위한 적용요건을 살펴보면 매출액 기준이 일반적이나, 스페인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의 적용요건과 연차신고의 적용요건을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적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에는 매출액 기준 이외에 미납세액의 존재 유무나 납세자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특례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에는 등록·납부의무가 면제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점이 특징임

- 많은 국가들이 과세 공급가액이 커질수록 VAT 신고·납부횟수 역시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구조를 갖고 있음
 - 아일랜드와 이탈리아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연간 4회, 뉴질랜드는 연간 2회, 나머지 국가는 연간 1회 신고로 납세의무를 종결함
 - 다만, 신고횟수의 감소로 연말에 VAT 납부부담이 급증하고, 체납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는 1년에 한 번만 하더라도 납부는 전년도 납부세액에 기초해 국세청이 예정 고지한 금액을 연중에 걸쳐 중간예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가 많음

〈표 IV-9〉 신고횟수 축소 적용요건

국가	적용요건	포기가능 여부	재적용 제한
호주	• 등록·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캐나다	• 전년도 과세공급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일 것
프랑스	• 연간 과세공급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일 것	○	n.a.
그리스	• 매출액이 기준금액 이하일 것 • 역내거래를 수행하지 않을 것	○	3년
헝가리	• 전년도 과세공급가액 및 VAT 납부세액이 기준금액 이하일 것
아이슬란드	• 전년도 연매출이 기준금액 이하일 것
아일랜드	• 과세당국으로부터 특별 승인을 얻은 자(그러나 구체적인 승인기준은 외부에 공표되고 있지 않음)
이탈리아	• 연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일 것
룩셈부르크	• 연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일 것
뉴질랜드	• 연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일 것	○	n.a.
노르웨이	• 연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일 것
폴란드	• 직전 12개월간 매출액이 기준금액 이하일 것
포르투갈	• 연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일 것	...	3년
슬로바키아	• 연간 과세공급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일 것
스페인	• 간이과세 적용요건과 동일
스웨덴	• 신고방식과 연간 과세대상 연매출 요건
스위스	• 간이과세 적용요건과 동일
영국	• 차년도 과세공급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일 것 • VAT 미납세액이 증가추세에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됨 • VAT group의 일원이 아닐 것 • 부가가치세법 위반이나 탈세로 인해 penalty를 부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¹⁾	○	1년

주: 1)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연차회계의 사용중단을 명할 수 있음

〈표 IV-10〉 신고횟수 축소 기준금액

국가	화폐단위	일반적인 VAT 신고주기	단축주기	기준금액				납부방식
				적용		탈퇴		
				자국통화	원화환산(백만원)	자국통화	원화환산(백만원)	
호주	AUD	매월 또는 분기 ¹⁾	연차	75,000 (비영리 150,000) ²⁾	77 (비영리 155)	n.a.	n.a.	중간예납 없음
캐나다	CAD	매월 또는 분기 ¹⁾	연차	1,500,000	1,631	n.a.	n.a.	납부세액이 CAD 3,000 이상인 경우 다음해에 분할납부(분기) 가능
프랑스	EUR	월별	연차	재화 763,000, 용역 230,000	재화 1,223, 용역 368	재화 763,000 또는 840,000, 용역 230,000 또는 260,000 ³⁾	재화 1,223 또는 1,346, 용역 368 또는 416	4번에 걸쳐 예납
그리스	EUR	분기	연차	150,000	240	n.a.		분기별로 예납 ⁴⁾
헝가리	HUF	분기	연차	8,000,000 ⁵⁾	47	n.a. ⁶⁾		...
아이슬란드	ISK	매월 또는 2개월 ¹⁾	연차	1,400,000	1	n.a.		...
아일랜드	EUR	2개월	연차	n.a. ⁷⁾	n.a. ⁷⁾	n.a. ⁷⁾	n.a. ⁷⁾	...
이탈리아	EUR	매월	분기	용역 309,874, 13, 재화 516,456, 90	용역 496, 재화 828	n.a.		분기별로 납부
룩셈부르크	EUR	매월	분기 또는 연차	①112,000~620,000 ②112,000	①169-935 ② 169	n.a. ⁸⁾		분기별, 연1회 납부
뉴질랜드	NZD	매월 또는 2개월 ¹⁾	반기	500,000	410	n.a. ⁹⁾		반기별로 납부
노르웨이	NOK	2개월	분기 또는 연차	1,000,000	190	분기별, 연1회 납부
폴란드	EUR	매월	분기별 ¹⁰⁾	10,000	15	분기별 납부
포르투갈	EUR	매월	분기별	650,000	980	650,000	980	분기별 납부
슬로바키아	EUR	매월	분기별	331,969.19	500	331,969.19	500	분기별 납부
스페인	EUR	매월	분기	450,000	721	n.a.	n.a.	분기별로 납부
스위스	CHF	분기	연차	3,000,000	3,157	연1회 납부
영국	GBP	분기	연차	1,350,000	2,497	1,600,000	2,959	3번 또는 9번에 걸쳐 예납

주: 1) 과세 공급가액이 커질수록 신고·납부횟수 증가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음

2) 등록 및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GST 등록을 한 경우에만 연차신고가 가능한바, 등록면제기준금액을 기재함

3) 첫 번째 기준금액(EUR763,000 또는 EUR230,000)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과세연도의 첫 번째 납부부터 매월 단위로 VAT를 신고해야 하나, 두 번째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두 번째 기준금액(EUR840,000 또는 EUR260,000)을 초과한 납부부터 매월 단위로 VAT를 신고해야 함

4) 직전 회계연도의 VAT 납부세액에 10%를 가산한 금액을 분기별로 나눠 예납

5) 연차신고를 위해서는 전년도 과세공급가액이 HUF8백만 이하여야 하며, 전년도 VAT 납부세액이 HUF1백만 이하여야 함

6) 전년도 VAT 납부세액이 HUF1백만을 초과하나 과세공급가액이 HUF8백만 이하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연차신고를 적용받을 수 있음

7) 과세당국이 내부 지침에 따라 case-by-case 기준으로 승인. 연차신고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외부에 공표되고 있지 않음

8) 과세당국은 분기, 연차 신고납부 납세자에게 월별신고납부의 선택가능 여부, 신고납부 변동사항에 대해 고지함

9)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반기신고 가능

- 과거 제때 정확하게 GST의 신고·납부가 이루어짐

- 부가세 기록을 잘 보관하고 있음

- 계절적인 요인 등에 의해 공급가액이 영향을 받은 경우

10) 소규모 사업자와 농민에 적용함

마. 현금주의회계제도

- 현금주의회계제도란 거래의 발생시점이 아니라 현금의 수취·지급시점에 기초해 VAT를 계산하는 회계방식을 말함
 - 매출에 대한 VAT(매출세액)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하며, 매입에 대한 VAT(매입세액)는 공급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음

- 현금주의회계제도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음
 - 현금주의회계제도의 장점은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하는 시점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금흐름에 유리하며, 대손채권이 발생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음
 - 금전출납부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합함
 - 다만, 공급자에게 공급대가를 지급한 이후에만 매입 및 경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현금주의회계제도의 적용요건은 매출액기준, 전년도 공급대가 등임
 - 오스트리아는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기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현금기준 적용이 가능하며, 영국은 VAT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온 사업자가 현금주의회계제도를 신청할 수 있음

〈표 IV-11〉 현금주의 회계제도 기준금액

국가	화폐 단위	기준금액				
		기준금액	적용		탈퇴	
			자국통화	원화환산(백만원)	자국통화	원화환산
호주	AUD	매출액	2,000,000	2,076	n.a.	n.a.
오스트리아	EUR	연매출액	110,000	176		
독일	EUR	전년도 공급대가	250,000	400	n.a.	n.a.
네덜란드	EUR	n.a. ¹⁾	n.a. ¹⁾	n.a. ¹⁾	n.a. ¹⁾	n.a. ¹⁾
뉴질랜드	NZD	연간 공급가액	2,000,000	1,641	n.a.	n.a.
영국	GBP	차년도 과세공급가액	1,350,000	2,497	1,600,000	2,959

〈표 IV-12〉 현금주의 회계제도 적용요건

국가	적용요건	포기가능 여부	최저 적용기간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또는 • 현금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하는 자 또는 • 과세당국으로부터 특별 승인을 얻은 자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매출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또는 • 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등(이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현금기준 적용 가능)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하인 자 또는 • 과세당국으로부터 특별 승인을 얻은 자 또는 • 전문직 종사자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소매상 또는 • VAT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총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 또는 • 과세당국으로부터 특별 승인을 얻은 자
뉴질랜드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또는 • 과세당국으로부터 특별 승인을 얻은 자(이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현금기준 적용 가능) 	○	n.a.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년도 과세공급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일 것 • VAT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온 자 • 전년도에 부가가치세법 위반 또는 탈세로 인해 penalty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	6개월

주: 1) 뉴질랜드의 경우 현금기준과 발생기준 이외에도 매출에 대해서는 발생기준으로, 매입에 대해서는 현금기준으로 GST를 계산하는 혼합기준(hybrid basis)이 존재함

2. 시사점

□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부가가치세를 채택한 28개의 OECD 회원국은 세법지식이나 계산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 다양한 과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핵심은 가장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사업자로 하여금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납세편의를 제공하여 납세협력부담을 줄여주는 것임

–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세액계산 단순화를 위한 간편납세제도, 신고납부횟수 축소, 현금주의과세제도 등이 있음

– 소규모 사업자 중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의무 면제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를 허용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납세편의를 제공함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납부의무 면제자 이외의 간이과세자에도 실제보다 낮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의 경감을 허용하는 특이점이 존재함

○ 이런 다양한 특례제도 중에 등록·납부의무 면제와 간편납세제도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 OECD 회원국 중 등록·납부의무 면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모두 면제하는 등록·납부의무 면제를 운영하는 국가와 사업자등록은 강제하고 납부의무만 면제되는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있음

– 우리나라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강제하는 나라는 프랑스, 헝가리, 포르투갈 등 상대적으로 소수에 해당함

– 특히, 우리나라는 사업자등록 여부가 다른 사회보험(예: 국민건강보험)의 차별적 적용 기준이 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의 강제가 고령자·장애인 등 영세사업자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우리나라의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은 2001년 이후 동결되어 있어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기준금액을 인하한 것임
 - 영국의 경우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기준금액 수준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제도 납부세액 계산방식처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는 간편납세제도를 운영중인 국가는 독일, 일본, 영국 등이 있음
 - 간편납세제도를 운영중인 국가는 이 제도의 적용요건으로 대부분 매출액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기준금액은 4,800만원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경우 간이과세제도의 전체 업종을 3개로 구분한 후 현실보다 낮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세부담 경감 효과를 유발하고 있음
 - 외국의 경우 업종 구분을 매우 다양하게 한 후 가급적 실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세부담 경감 효과를 최소화하고 단지 납세편의만을 제공하기 위해 간편납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독일은 54개, 영국은 55개 업종으로 세분하여 상이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고 있음
 - 간이과세자 간의 과세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타당하게 설정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세분할 필요성이 있음

참고문헌

- 김승래 · 박명호 · 홍범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7.
- 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제도(프랑스)』, 한국조세연구원, 2009.
- 최원석, 「부가가치세제도 선진화 방안」, 『세제발전과 납세자권의 향상 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조세연구원, 2009.
- Australian Master Tax Guide, CCH, 2009.
- Roger Barnard, British tax guide : value added tax 2006-2007, CCH, 2006.
- Sarah Laing, British Master Tax Guide, CCH, 2006.
- HMRC, Supplement to Notices 700/1 and 700/11, 2008.04.
- _____, Should I be registered for VAT?, 2007.10.
- _____, Notice 733: Cash accounting, 2008.07.
- _____, Notice 733: Flat Rate Scheme for small businesses, 2007.03.
- _____, FRS7300/7400- Flat Rate Scheme Guidance: Trade Sectors
- _____, Notice 732: Annual Accounting, 2009.08.
- _____, GST for small business, Australian Taxation Office, 2009
- 독일 법무부(<http://www.gesetze-im-internet.de>)
- 영국 국세청(<http://www.hmrc.gov.uk>)
- 일본 국세청(<http://www.nta.go.jp>)
- 프랑스 헌법 정보사이트(<http://www.legifrance.gouv.fr/>)
- 캐나다 국세청(<http://www.cra-arc.gc.ca>)
- 호주 국세청(<http://www.ato.gov.au>)
- www.ibfd.org

세법연구 09-10
**주요국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제도 조사**

2009년 12월 23일 인쇄

2009년 12월 30일 발행

저 자 박명호 · 기은선 · 정경화

발행인 원 윤 희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09

ISBN 978-89-8191-476-9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